

#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계획 수립 연구

김승권 윤선화  
김형욱 정윤경 이주영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 9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9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10  |
| 제2장 주요 외국의 아동안전 정책 동향 .....      | 12  |
| 제1절 스웨덴과 유럽국가 .....              | 13  |
| 제2절 미국 .....                     | 15  |
| 제3절 영국 .....                     | 17  |
| 제3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 23  |
|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배경 .....         | 23  |
| 제2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 26  |
| 제4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결과 .....         | 29  |
| 제1절 종합 평가 .....                  | 29  |
| 제2절 분야별 평가 .....                 | 34  |
| 제5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성과와 과제 .....       | 99  |
|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성과와 문제점 .....      | 99  |
| 제2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향후 과제 .....        | 104 |
| 제6장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안)」 .....   | 106 |
|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 ..... | 106 |
| 제2절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          | 110 |

|                      |     |
|----------------------|-----|
| 제3절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 | 112 |
| 제7장 결론 .....         | 144 |
| 참고문헌 .....           | 146 |

## 표 목 차

|  |    |
|--|----|
| 〈표 2- 1〉 영국의 아동정책 중 아동안전정책 .....             | 18 |
| 〈표 2- 2〉 영국정부의 연령단계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전략 .....      | 19 |
| 〈표 2- 3〉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범교과 안전교육 내용 .....        | 20 |
| 〈표 3- 1〉 아동안전종합대책 분야별 과제수 .....              | 26 |
| 〈표 3- 2〉 아동안전종합대책 분야별 추진과제 .....             | 27 |
| 〈표 4-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 .....               | 36 |
| 〈표 4-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 36 |
| 〈표 4- 3〉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제도 운영 현황 .....      | 38 |
| 〈표 4- 4〉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실적 .....                  | 39 |
| 〈표 4- 5〉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적치물 등 정비현황 .....         | 40 |
| 〈표 4- 6〉 반사재 용품 보급 실적 .....                  | 41 |
| 〈표 4- 7〉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         | 42 |
| 〈표 4- 8〉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          | 43 |
| 〈표 4- 9〉 OECD 가입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 45 |
| 〈표 4-1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2006년) .....            | 46 |
| 〈표 4-1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현황 ..... | 47 |
| 〈표 4-12〉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시설 현황 .....          | 47 |
| 〈표 4-1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                | 51 |
| 〈표 4-1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현황 .....            | 52 |
| 〈표 4-1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 .....                | 52 |
| 〈표 4-16〉 안내표지판 및 간이구조 장비 비치 현황 .....         | 54 |
| 〈표 4-17〉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적 .....               | 55 |
| 〈표 4-18〉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현황 .....               | 55 |

|          |   |    |
|----------|---|----|
| 〈표 4-19〉 | 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 현황                         | 58 |
| 〈표 4-20〉 | 어린이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 59 |
| 〈표 4-21〉 |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 및 학대아동보호건수             | 62 |
| 〈표 4-22〉 | 저위험군 성범죄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 실시                 | 63 |
| 〈표 4-23〉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 64 |
| 〈표 4-24〉 | 학교폭력 단속 현황                              | 65 |
| 〈표 4-25〉 |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 66 |
| 〈표 4-26〉 | 성폭력 가해청소년 현황                            | 66 |
| 〈표 4-27〉 | 교정기관 수용 내역                              | 67 |
| 〈표 4-28〉 |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현황                         | 67 |
| 〈표 4-29〉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 70 |
| 〈표 4-30〉 | 방법창 설치현황 조사 및 개선 실적                     | 71 |
| 〈표 4-31〉 | 어린이 중독사고 사망자                            | 74 |
| 〈표 4-32〉 | 어린이용품 관련 안전사고                           | 75 |
| 〈표 4-33〉 | 연도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조리·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 77 |
| 〈표 4-34〉 | 연도별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부적합율                  | 77 |
| 〈표 4-35〉 | 학교 식중독사고 발생현황                           | 78 |
| 〈표 4-36〉 | 식품안전교육 실시현황                             | 79 |
| 〈표 4-37〉 | 미아발생 현황                                 | 82 |
| 〈표 4-38〉 | 실종아동 발견 현황                              | 82 |
| 〈표 4-39〉 | 학급보조자 연수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                   | 85 |
| 〈표 4-40〉 | 어린이 안전캠프 참여 현황                          | 87 |
| 〈표 4-41〉 | 교원 안전교육 연수 현황                           | 88 |
| 〈표 4-42〉 | 학급보조자 연수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                   | 88 |
| 〈표 4-43〉 | 행정구역별 전체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2005년)    | 95 |
| 〈표 4-44〉 | 사고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현황                        | 97 |
| 〈표 4-45〉 |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 현황                       | 98 |

|  |     |
|--|-----|
| 〈표 5- 1〉 아동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            | 101 |
| 〈표 6- 1〉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       | 107 |
| 〈표 6- 2〉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 | 111 |
| 〈표 6- 3〉 어린이용품 관련 안전사고 .....                 | 116 |
| 〈표 6- 4〉 연령별 손상발생장소 .....                    | 119 |
| 〈표 6- 5〉 연령별 손상발생장소 .....                    | 121 |
| 〈표 6-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시설 현황 .....          | 122 |
| 〈표 6- 7〉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                | 124 |
| 〈표 6- 8〉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 .....                | 125 |
| 〈표 6- 9〉 2005년도 어린이교통사고 상태별 사상자수 .....       | 126 |
| 〈표 6-10〉 유아탑승 차량 1,523대 대상 조사 .....          | 126 |
| 〈표 6-11〉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현황 .....               | 129 |
| 〈표 6-12〉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        | 136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2- 1] |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의 조직도 .....          | 16 |
| [그림 3- 1] | 아동 안전종합대책 추진 체계 .....          | 24 |
| [그림 3- 2] | 아동 안전종합대책 과제 변화 현황 .....       | 25 |
| [그림 4- 1]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추이 .....           | 37 |
| [그림 4- 2]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추이 .....            | 39 |
| [그림 4- 3] |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적치물 정비 추이 .....     | 40 |
| [그림 4- 4]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          | 41 |
| [그림 4- 5]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대비 실제 추이 ..... | 42 |
| [그림 4- 6]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 .....     | 43 |
| [그림 4- 7] |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추이 .....           | 44 |
| [그림 4- 8] |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추이 .....          | 56 |
| [그림 4- 9] | 추락사고 사망자 추이 .....              | 59 |
| [그림 4-10] |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             | 66 |
| [그림 4-11] | 성폭력 가해청소년 및 피해청소년 추이 .....     | 67 |
| [그림 4-12] |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현황 .....     | 68 |
| [그림 4-13] |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현황 .....           | 68 |
| [그림 4-14] | 어린이 중독사고 사망자 추이 .....          | 75 |
| [그림 4-15] | 어린이 용품 사고건수 추이 .....           | 75 |
| [그림 4-16] |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추이 .....           | 78 |
| [그림 4-17] | 식품안전교육 실시 현황 .....             | 79 |
| [그림 4-18] | 실종아동 수색동원 인원 및 실종아동발견건수 .....  | 83 |
| [그림 4-19] | 학급보조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         | 89 |
| [그림 4-20] | 시·도별 아동 사망사고 현황(2005) .....    | 95 |

|           |   |     |
|-----------|---|-----|
| [그림 4-21] | 사고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 추이 .....                 | 98  |
| [그림 4-22] |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 추이 .....                   | 98  |
| [그림 5- 1] | 연도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                     | 99  |
| [그림 5- 2] | 국가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             | 100 |
| [그림 5- 3] | 연도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 추이 .....               | 100 |
| [그림 5- 4] | 아동안전대책 관련 예산변동 추이 .....                   | 102 |
| [그림 6- 1] | 유럽국가와 국내 아동안전관련 법 비교 .....                | 115 |
| [그림 6- 2] | 어린이 용품 사고건수 추이 .....                      | 116 |
| [그림 6- 3]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과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추이 ..... | 123 |
| [그림 6- 4] |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추이 .....                     | 130 |
| [그림 6- 5] |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추이 .....                  | 131 |
| [그림 6- 6] |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                        | 136 |
| [그림 6- 7] |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                         | 139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국(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아동에 비해 각종 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어린이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어린이안전사고 사망률을 매년 10%씩 감소하여, 5년 후에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에 진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3년 6월에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 매년 아동사고 사망률의 10% 감소 목표를 달성하였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14.8→ 8.3명)하였으나 OECD 평균(7.3)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주요 국가를 비교해 볼 때, 영국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한국 14.8명, 멕시코 17.1명이었다(곽숙영, 2006).

이와 같은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통계 구축방안 연구"(2006)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136억원이었으며, 이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천만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손상 직접의료비용은 950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남자의 경우 615억원, 여자의 경우 33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연평균 비용은 입원 402억원, 외래 진료 546억원이며, 이는 1회 입원 및 외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손상 후유증으로 반복적인 입원과 진료를 감안하면 실제 의료비용은 더 증가 할 수 있다. 아동 사고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률은 증가하여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기정부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고, 주요 선진국의 아동안전정책을 검토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2003년 5월 제81회 어린이날 「어린이안전원년」선포를 계기로 확정·발표된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2003년 당시 아동안전종합대책은 12대 분야 76개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다. 2007년 현재 아동안전종합대책은 12대 분야 76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완료되어 58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 아동안전종합대책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아동안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토한다. 주요 외국의 아동안전정책 전달체계를 비교 검토한다. 또한 일반아동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파악한다.

셋째, 아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5개년 간 아동안전정책의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한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동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기적, 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

하여 아동안전정책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주요 선진국의 아동안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비교·검토한다. 이와 함께 아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청와대 어린이안전점검자문위원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 진척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제고한다.

셋째,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안전종합대책 추진 12개 부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및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다. 통계청 사망통계 원자료(5년간) 및 CDC 자료 중 아동사망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및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안전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아동안전 취약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 제 2 장 주요 외국의 아동안전 정책 동향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일견 인류에게 무한한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교통문제, 주택문제, 재난 발생, 사고다발의 안전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안전문제는 오늘날 지역적 국가적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상해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부담을 증대시켜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World Confer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 1989). 200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내에 상해폭력예방부(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Department)를 설립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Krng, Butchart, & Pedan, 2001).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 Beck)은 이처럼 확대, 심화되고 있는 위험의 세계화 추세에 주목하고 현대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벡에 의하면 위험사회는 산업사회의 연장이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부의 분배가 지배적 조직 원리인 산업사회와 달리, 위험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험의 분배이다(Beck, 1992; 1997).

또한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의 성격이 변했다. 즉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지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점점 더 비가시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심영희, 1998).

그것은 인간의 감각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산업적 진보에 대한 확신과 합의를 붕괴시키며, 전체 구성원들을 공포의 공동체 내에 평준화시키는 등 인간의 일상적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일어난 가시적이고 알려진 피해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비가시적이고 알려지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피해와 이로 인한 공포가 정치와 과학의 주요의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몇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생활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안전 확보에 소홀히 한 결과 오늘날 재난발생과 안전문제는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즉 위험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반도의 창공에 무겁게 드리우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종길, 1996).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재난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문제는 21세기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 제 1 절 스웨덴과 유럽국가

스웨덴에서는 1950년 중반 이후 아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호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스웨덴 사회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14세 이하의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사망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50년대 중반에 400건이었던 어린이 안전사고가 1990년대 초반에는 100건이 안되었다(윤선화, 1999).

1954년 영양장애와 감염증에 의한 어린이 사망이 감소함에 따라 사고사가 사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였다. 이로 인해 옘살라 대학의 Berfenstam 교수와 Ehrenpreis 소아과 의사가 주축이 되어 스웨덴의학회의 소아과 부서와 적십자를 통해 아동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교과부, 어린이 보호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동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위원회(Swedish Joint Committee on Childhood Accident Prevention)가 설치되었다(田中 哲郎, 1997).

이 위원회의 목적은 사고에 관한 대규모캠페인의 실시, 위험한 환경과 상품의 일소와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에 관한 지식과 관심을 높이는 일을 하였다. 특히 1952년 414명의 아동이 사고로 사망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사고사례 분석팀이 구성되었고, 이 프로젝트팀에는 아동학자, 소아과의사, 외과의사, 사회

학자, 심리학자, 기술자, 사회사업가, 등 많은 직능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사고분석결과는 캠페인의 테마와 사고대책을 위한 주요한 교재로 활용되었고, 25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1981년에는 정부기관으로 아동환경위원회(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로 설립되었다. 1995년 당시 위원회는 Mr. Gunilla Bondin을 중심으로 아동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보공학을 전공한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田中 哲郎, 1997).

아동환경위원회 활동의 첫번째 목적은 아동이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몇 개의 테마를 설정하고, 프로젝트팀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했고, 테마에 따라 직원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팀에 참석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의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어린이보호회, 소비자단체 등에 정보로 제공되고, 교재로 이용된다. 특히 1991년 아동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스웨덴의 모든 법률 기준을 재평가하는 작업(Berfenstam & Soderquist, 1991)이 실시되어 아동 안전에 대한 법규 강화의 결과로 오늘날 아동의 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한편 1982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은 가정과 레저에 의한 사고 감시 시스템을 검토(European Home and Leisure Accident Surveillance System)하여 1986년부터 프로젝트팀을 편성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사고정보를 수집하여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왔고, 이후 유럽아동안전연맹(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을 설립하여 현재 27개 유럽회원국들로부터 아동 안전정보와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ECSA는 “이성적인 힘과 동정심, 그리고 연대의 힘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치 아래(ECSA, 2002), 초창기에는 각 국가에서 아동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이후 아동안전을 위한 법률 정비, 각종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부모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전개, 국민들의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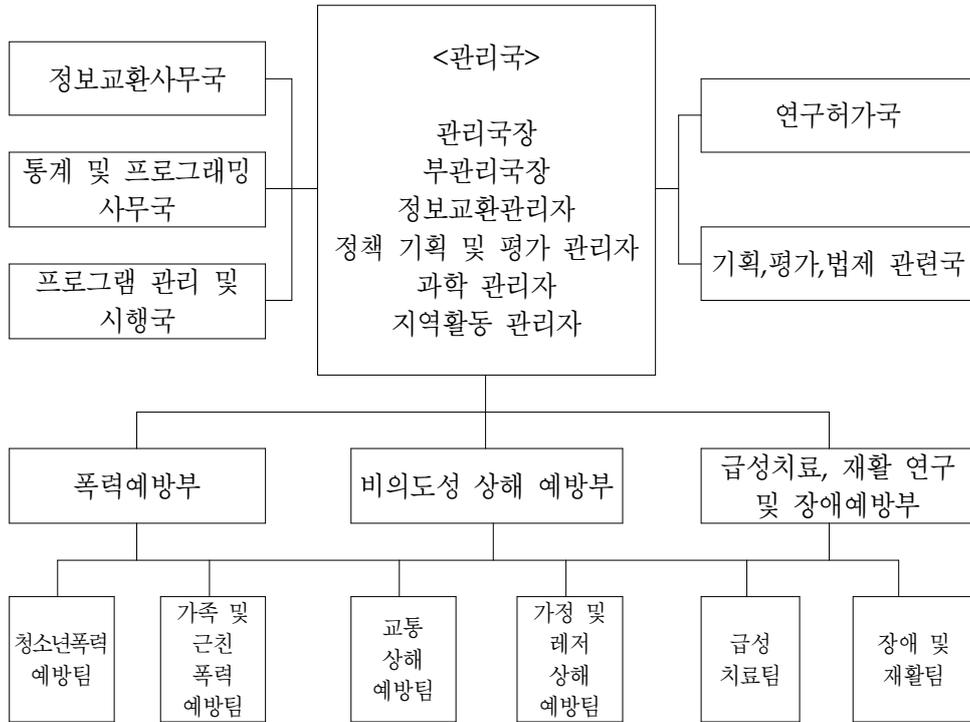
## 제 2 절 미국

미국의 아동안전대책은 연방정부차원과 주정부차원으로 나누어서 시행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선언적 의미의 법을 제정하고,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아동안전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곳이 바로 미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이다.

질병통제센터(CDC)는 1992년 6월에 각종 사고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기구로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NCIPC)를 설립했다.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는 140명의 직원과 비의도성 상해관리부, 장애 예방부, 폭력예방부 등 3개 부서와 5개의 사무국으로 이루어졌다(Sleet, Bonzo, & Branche, 1998).

[그림 2-1]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의 조직도



자료: Sleet, et al.,(1998). An overview of the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a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비의도성 상해로 인한 사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1995년부터 SafeUSA라는 공공보건과 안전과 관련된 20여개 정도의 연합체가 구성되어 안전한 가정, 안전한 학교, 안전한 직장, 안전한 이동과 수송, 안전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미국 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과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안전사업은 가정에서 화재 및 익사, 추락, 레저 및 스포츠와 연관된 안전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학버스 안전, 자전거 안전, 놀이 및 스포츠 안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사업으로 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 어린이 추락 예방사업, 놀이시설 안전 등의 어린이안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차원에서는 1991년 이후로 아동안전네트워크(Child Safety Network) 전국상해폭력방지자원센터(National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Resource Center)를 설립하여 아홉 가지의 주요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CSN은 주 모자보건부(Maternal and Child Health Agency)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와 폭력방지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네트워크조직이다. 이곳에서는 비의도성 사고와 의도성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과 청소년 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각 주에 기술 지원, 각 주의 안전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과 정책 활동 그리고 주 및 지방 사고 예방담당자를 대신하여 연방기관 내에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제 3 절 영국

영국이 아동 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한 국가가 된 것은 아동사고예방 전문 기관과 정부의 노력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아동안전 정책은 안전한 아동을 목표로 부모, 가족, 보호자는 아동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강조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설정과 더불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부모에게 주요 위험에 대한 정보와 대처법 제공, 아동 유기와 방임을 최소화하는 것, 보호아동의 안전지원, 배우는 것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안전 지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 서비스, 교통, 가정, 놀이, 약물 등의 안전 예방 등의 점검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표 2-1〉 영국의 아동정책 중 아동안전정책

| 결과    | 안전한 아동  |
|-------|---|
| 지원영역  | 부모, 가족, 보호자는 안전한 가정과 안정된 환경 조성.   |
| 목표&지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 보호 등록 재등록.</li> <li>2. 0~15세 교통사고 사망률.</li> <li>3. 11~15세 왕따 아동률(지난 12개월 기준).</li> <li>4. 범죄 &amp;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공포.</li> <li>5. 시설보호 후 입양 아동.</li> <li>6. 아동보호 통계.</li> <li>7. 차별, 왕따, 범죄에 관한 안전 정보.</li> </ol>   |
| 점검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 보호자에게 아동의 주요 위협에 대한 정보 &amp; 대처법 제공.</li> <li>2.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li> <li>3. 아동유기, 방임 최소화.</li> <li>4.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과 일치.</li> <li>5. 보호 아동의 안전 지원.</li> <li>6. 배우는 것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안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적 가정폭력 피해아동보호지원 * 전문가훈련 및 교육.</li> <li>* 위기에 처한 아동의 정보 공유, 기록, 안전배치(국가 간 교류).</li> </ul> </li> <li>7.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 서비스.</li> <li>8. 교통, 가정, 놀이, 약물 등의 안전 예방.</li> <li>9. 십대부모 가족의 독립적 생활 지원.</li> <li>10. 왕따, 차별로부터 보호.</li> </ol> |

우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국토해양부의 환경교통지역국(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7년 영국 정부는 200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로안전실행지침'을 개발하여 각 주정부로 하여금 도로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2000에는 토니블레이어 총리에 의해 새로운 교통안전정책으로 201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아동수를 50%로 낮추는 정책인 "Tomorrow's roads: safer for everyone, -The Government's road safety strategy and casualty reduction targets for 2010-"을 발표하여, 연령별 아동에게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 내용을 발표했다.

〈표 2-2〉 영국정부의 연령단계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전략

| 연령         | 전략  |
|------------|---|
| 영아와 유아     | •도로에서의 안전한 행동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조언.             |
| 초등학교 아동    | •특별한 교통상황에서 자전거타는 것의 위험성을 부모에게 알려주고 자전거 훈련과 보행자훈련 강화. |
| 10대 초반 청소년 | •장거리 여행 및 자전거훈련, 통학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
| 10대 후반 청소년 |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기술, 책임감에 대해 조언.                           |

자료: DETR(2000), "Tomorrow's roads: safer for everyone-The Government's road safety strategy and casualty reduction targets for 2010-".

영국 정부에서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강화와 국민들에게 아동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강조했다. 아동의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노력은 1970년대 그린 크로스 코드(Green Cross Code)라고 불리는 도로횡단원칙을 미국 전역의 아동에게 교육하고, 그린크로스맨이라는 연기자를 등장시켜 포스터와 방송, TV 광고를 통해 홍보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THINK!' 광고캠페인을 실시하여 80%의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Hills, 2001).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의 행정국은 1985년 스코틀랜드 교통안전캠페인(Scottish Road Safety Campaign)을 조직하여 유아를 비롯하여 각 학교에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를 공급하고, 국민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보건성장관은 '국가의 건강(The Health of Nation)' 백서에서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33% 감소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건강한 도시,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성은현·윤선화 외, 2001). 이러한 방침아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개인, 사회, 건강교육, 시민교육, 직업교육 등의 과목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표 2-3 참조). 특히 영국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자료 공급과 지원을 안전전문기관과 시민단체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RoSPA(Royal Society for the Pervation of Accident)는 1962년에 영국왕실지원으로 설립된 안전전문기관으로써 교통안전팀, 가정안전팀, 안전교육팀, 역사예방팀, 화

재안전팀 등으로 나뉘어져 전문가육성, 안전교재 편찬 보급, 사고분석 등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표 2-3〉 영국 국가교육과정의 범교과 안전교육 내용

| 구분  | 개인·사회·건강교육  | 시민교육  | 직업교육   |
|-----|---|---|--|
| 1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학교, 놀이터, 도로상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법 배우기.</li> <li>도움을 청하는 것 실습하기.</li> <li>선택하는 방법 배우고 실습 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실/운동장/식당에서의 안전규칙에 합의하도록 돕기.</li> <li>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고/어려운지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규칙을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실습하기.</li> <li>안전규칙을 지키고/어기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을 지키는 것을 돕는 성인들의 역할과 활동기술에 관해 배우기.</li> <li>그러한 성인들과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 파악하기.</li> <li>이러한 기술들을 실습하고, 어떻게 그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반영하기.</li> </ul>                     |
|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위험을 인지하는 법 배우기.</li> <li>보다 자신 있고, 정보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법과, 편견을 인식하는 법 배우기.</li> <li>중등학교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하기.<br/>예) 통학수단과 안전한 길 파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련 이슈들에 대한 조사, 토론, 논쟁 예) 운동장에서.</li> <li>그러한 이슈들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 욕구, 감정 조사.<br/>예) 운동장 안전이슈들에 관한 조사.</li> <li>운동장 안전규칙을 만들고, 변경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br/>예) 정부관료에게 조사결과 제출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에서 안전규칙을 실시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운전자, 경찰, 소방관, 구조원-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술들 파악하기.</li> <li>이러한 안전 문제들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파악하기</li> <li>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실습할 것인지 계획하기.</li> </ul> |

| 구분  | 개인·사회·건강교육  | 시민교육  | 직업교육  |
|-----|---|---|---|
| 3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법 배우기.</li> <li>• 안전을 위협하는 타인의 압력을 인식하는 법, 도움을 청하는 것을 포함해 압력에 저항하는 법 배우기.</li> <li>• 응급처치 순서와 도움/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관해 배우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또는 지역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li> <li>• 대중의 삶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 배우기. 예) 지역안전문제에 관한 로비나 캠페인에 필요로 되는 기술들을 파악하고 실습하기-편지쓰기, 언론/매체 접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작업하기- 운전 교육가, 환경보건, 건강안전관련 직원.</li> <li>•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 관한 안전문제들에 관해 토론하기</li> <li>• 개인의 능력과 적성 고려-안전이슈에 관련된 직업에 관해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지 계획하기.</li> </ul> |
| 4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고 따르기.</li> <li>• 기본 응급조치와 소생술을 포함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들 배우기.</li> <li>• 도움이 되지 않는 압력을 단호하게 다루고, 자신 있게 도움을 청하는 기술 발달시키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기술들을 발달시키기 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놀이터와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한 조사, 출판, 공공 연설.</li> <li>• 민주적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 발달시키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의 직업/이행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기.</li> <li>• 고용자, 피고용자,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관련된 안전에 관해 토론하기.</li> <li>• ROA/CV의 안전 관련 기술, 자격, 경험과 기록을 확인하기.</li> </ul>  |

자료: NCC(2000), 성은현·윤선화 외(2001), 『학교 등의 교통안전교육 체계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가정과 관련되거나 아동용품과 관련된 아동사고예방은 물가소비자보호성이 주관 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성은 1976년에 가정 내 사고조사 시스템(Home Accident Surveillance System)과 레저사고조사시스템(Leisure Accident Surveillance System)을 운영하여, 가정 내 사고를 분석하여 사고의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새로운 위험을 찾아내 예방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예방조치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각종 사고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며,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안전대책부에서 해석, 평가되어, 각종 계몽교육용 교재로 개발된다. 어린이사고 사례는 아동안전전문단체인 아동사고방지협회(Child Accident Prevention Trust)로 전달되어 각종 아동안전정책 수립과 아동사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사고방지협회는 1977년에 발족되어 수집된 사고정보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분석하고, 각 정부별로 새로운 사고 방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며,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제품과 시설 기준을 설정하며, 교육, 출판, 강습, 컨설팅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제 3 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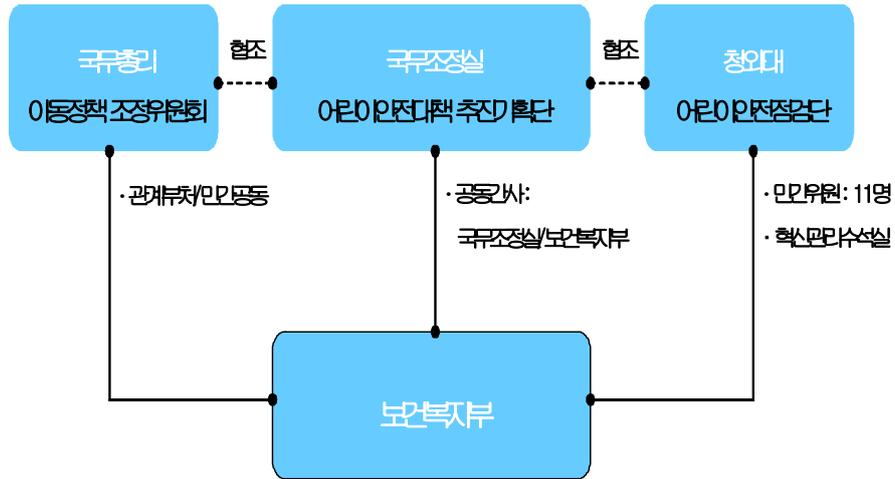
### 제 1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배경

#### 1. 추진배경

2000년 WHO의 보고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 아동의 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스웨덴·영국이 3.8명, 독일이 5명, 일본이 5.8명, 호주가 7.3명, 미국이 10.3명, 한국이 14.8명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각 부처에서 아동안전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할 것과 아동안전 총괄부처의 설치 등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03년 5월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6월에 12개 부처·청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차원의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대통령 비서실에 「어린이안전 점검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본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추락사고, 익사, 중독 대책 등 12대 분야 76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2년 1,210명에서 2007년 63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아동 안전종합대책 추진 체계



## 2. 추진경과

2003년 6월,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7대 분야 58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4년 9월에는 국무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실에서 9대 분야 66개 과제로 보완·확충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12대 분야 76개 과제로 재보완·확충되었다. 여기에서는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한정했던 아동안전 대책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전까지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아동학대, 성폭력, 미아 찾기 등 과제를 이관하였다. 2006년에는 76과제에서 완료된 18개 과제를 정리하여, 12대 58개 과제로 정비하였다.

[그림 3-2] 아동 안전종합대책 과제 변화 현황



## 제 2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아동안전종합대책은 향후 5년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법·제도 개선, 시설개선, 교육·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을 합리화한다. 둘째, 아동 보호구역에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어린이 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동네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개선을 실시한다. 넷째, 아동안전에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범정부적인 강력한 아동안전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본 종합대책은 12대 분야 76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12대 분야는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익사사고대책, 추락사고대책, 아동학대·폭력방지,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 불량식품방지, 미아방지,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관련, 안전대책추진체계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확대 및 개선 등 16개 과제, 익사·추락사고 대책 분야는 물놀이지역 인명구조장비 배치 등 12개 과제, 안전문화·교육 분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등 17개 과제, 놀이시설·유아용품 분야는 놀이용품 및 불량식품방지 등 12개 과제, 아동학대·폭력예방 분야는 아동학대·폭력대책 및 미아 찾기 등 8개 과제, 기타 분야는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아동안전종합대책 분야별 과제수

| 교통안전 | 익사·추락 | 안전문화 | 놀이시설 | 학대·폭력 | 기타 |
|------|-------|------|------|-------|----|
| 16   | 12    | 17   | 12   | 8     | 11 |

〈표 3-2〉 아동안전종합대책 분야별 추진과제

| 분야                          | 추진과제                                   | 주관 기관    |
|-----------------------------|--|----------|
| 교통<br>안전                    |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기존시설 정비보강             | 행안부      |
|                             |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경찰청, 행안부 |
|                             |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 가중제 도입검토   | 경찰청      |
|                             | 4. 6세미만 어린이 뒷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경찰청      |
|                             | 5.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담당제 구축              | 경찰청, 방재청 |
|                             |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완료)                   | 여성부      |
|                             | 7. 학교시간대 어린이 보호활동 강화                   | 교과부, 경찰청 |
|                             | 8.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                   | 경찰청, 행안부 |
|                             | 9.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 등 정비             | 행안부      |
|                             | 10. 반사재 용품 개발 및 보급                     | 국해부      |
| 어린이<br>통학<br>차량<br>제도<br>개선 | 11. 어린이 통학차량 중 지입차량·유상운송 등 합법화 문제      | 국해부      |
|                             | 1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 국해부, 경찰청 |
|                             | 13. 보육시설, 학원 등 인·허가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항 규제 | 교과부, 경찰청 |
|                             | 14.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 계도 및 단속강화 | 경찰청      |
|                             | 15.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경찰청      |
|                             | 16.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 지원     | 교과부      |
| 익사<br>사고<br>대책              | 17.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제작·배포(완료)  | 복지부      |
|                             | 18. 구명복 및 물놀이 기구의 안전기준 강화(완료)          | 지경부      |
|                             | 19. 물놀이 사고 등 익사사고 책임관리                 | 소방방재청    |
|                             | 20. 익사사고 빈발지역 집중적인 예방대책 추진             | 소방방재청    |
|                             | 21. 위험 및 유명 물놀이지역 인명구조 장비 현장비치         | 소방방재청    |
| 추락<br>사고<br>대책              | 22.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권장(완료)          | 건교부      |
|                             | 23. 민관 합동 인명구조 체제 구축                   | 소방방재청    |
|                             | 24. 주택 난간의 기준 강화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점검(완료)    | 국해부      |
|                             | 25. 놀이기구 제작기준(추락방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완료)   | 경제부      |
|                             | 2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안전관리 강화     | 여성부, 교과부 |
|                             | 27. 유원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복지부      |
|                             | 28. 계단 및 현관 등에 대한 자동 조명장치 설치 설계 권장(완료) | 국해부      |
|                             | 29. 아동학대 예방사업 내실화                      | 복지부      |
| 아동<br>학대<br>·<br>폭력<br>방지   | 30. 아동학대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                | 복지부      |
|                             | 31. 각종 집회시 어린이 동원행위 금지                 | 복지부      |
|                             | 32. 어린이 대상 성보호 제도 개선                   | 복지부      |
|                             | 33.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 여성부, 복지부 |
|                             | 34.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 교과부, 경찰청 |

| 분야                                 | 추진과제   | 주관 기관     |
|------------------------------------|--|-----------|
| 화재·약물<br>놀이<br>용품<br>등<br>사고<br>대책 | 35. 어린이집,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 방염처리 제품 사용 의무화(완료) | 소방방재청     |
|                                    | 36. 학교시설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완료)                      | 소방방재청     |
|                                    | 37.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복지부       |
|                                    | 38.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통합 매뉴얼 개발                | 방재청, 총리실  |
|                                    | 39. 화기취급기구의 안전장치 부착 및 경고표시 강화(완료)            | 경제부       |
|                                    | 40. 내부에서 쉽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방범창 설치 권장            | 소방방재청     |
|                                    | 41.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포장 사용품목 확대          | 식약청, 경제부  |
|                                    | 42.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 경제부       |
|                                    | 43. 장난감·놀이기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산자부, 소보원  |
| 불량<br>식품<br>방지                     | 44. 학교급식 개선 및 식품안전교육 실시                      | 교과부, 식약청  |
|                                    | 45. 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업자 단속강화                       | 식약청       |
|                                    | 46. 식품안전교육 실시                                | 교과부, 식약청  |
| 미아<br>찾기                           | 47. 미아발생 예방·홍보사업                             | 복지부       |
|                                    | 48. 실종아동찾기 사업 추진                             | 경찰청       |
| 안전<br>교육                           | 49. 교육과정 개편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완료)        | 교과부       |
|                                    | 50. '어머니 안전지도사' 양성 및 활용(종결)                  | 행안부       |
|                                    | 51. 시군구 교육청별 학교 안전 전담 장학사 지정·운영(완료)          | 교과부       |
|                                    | 52. 교육교재 개발·보급(완료)                           | 교과부, 복지부  |
|                                    | 53. 학급보조자 연수시 안전교육시간 배정 의무화(완료)              | 교과부       |
|                                    | 54. 안전교육 담당교사 안전교육과정연수 의무화(완료)               | 교과부       |
|                                    | 55.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시간 배정 구체화(완료)               | 여성부       |
|                                    | 56.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확대                           | 소방방재청     |
|                                    | 57. 어린이 안전캠프 실시 확대                           | 소방방재청     |
| 안전<br>문화<br>운동                     | 58. 어린이 안전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 활성화                  | 소방방재청     |
|                                    | 59. 인터넷을 통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급                     | 소보원       |
|                                    | 60. 국민안전현장」 제정 공포(완료)                        | 소방방재청     |
|                                    | 61.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 소방방재청     |
|                                    | 62.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소방방재청     |
|                                    | 63.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 소보원       |
| 자치<br>단체<br>관련                     | 6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홍보처, 복지부  |
|                                    | 65. 문화행사 개최 및 캐릭터 개발                         | 소방방재청     |
|                                    | 66. 어린이 교통공원(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            | 경찰청, 행안부  |
|                                    | 67. 국민안전 체험관 설치 확대                           | 방재청, 지자체  |
|                                    | 68.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 방재청, 행안부  |
|                                    | 69. 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 총리실·방재청   |
|                                    | 70. 어린이 안전시설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재원 확보(종결)          | 방재청, 행안부  |
| 안전<br>대책<br>추진<br>체계               | 71.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준칙 제정    | 지자체, 방재청  |
|                                    | 72. 아동 안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총리실       |
|                                    | 73.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기준 개발                      | 총리실, 시민단체 |
|                                    | 74.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소보원       |
|                                    | 75. 규제개혁 추진의 합리화                             | 총리실       |
|                                    | 76.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 총리실       |

## 제 4 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결과

### 제 1 절 종합 평가

본 절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아동안전종합대책」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대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대상, 분야 및 과제의 설정, 전달체계가 적절하였는지,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부처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대책이 아동안전사고 예방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가 평가의 내용이다.

#### 1. 적절성 평가

##### 가.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아동안전종합대책」의 목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2002년의 1/2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법·제도 개선, 시설개선, 교육·안전문화운동을 주요 중점추진과제로 내세우면서 5년 이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강력한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아동안전종합대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적절하다. 특히 3가지 중점추진과제와 추진전략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혁하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끌어야 하므로 규제개혁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한 추진전략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아동

안전종합대책」 추진 당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중점화하여 시설개선을 수행한다는 것 또한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선진외국의 선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일반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추진전략 하에 교육·안전문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어린이 안전 관련업무가 대상 및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13개 부처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관련 부처 간의 연계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나. 대상의 적절성

「아동안전종합대책」의 대상은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고, 어린이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연령의 설정은 국내외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연령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아동 안전대책과 관련된 연령을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보고 있으므로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동에 관한 주요 법률인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 다. 분야 설정의 적절성

「아동안전종합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의 개념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이에 대한 위협을 포괄하는 안심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차량제도 개선, 익사사고 대책, 추락사고 대책, 아동학대·폭력방지,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 불량식품 방지, 미아찾기,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 관련, 안전대책

추진체계 12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추진과제는 총 76개 과제가 설정되었다.

우선 어린이 안전에서 사망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적 손상과 관련된 교통, 익사, 추락, 중독,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차량제도 개선, 익사사고 대책, 추락사고 대책,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 불량식품 방지가 주요대책으로 포함된 점에서는 분야 설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가장 중요하게 추진될 과제로 2개 분야를 설정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도 어린이의 신변과 관련된 미아찾기,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 분야의 설정 또한 적절하다 볼 수 있다.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에서 논의되었던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안전대책 추진체계 분야도 추진전략에 입각한 분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 관련이 별도의 분야로 설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안전대책 추진체계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은 3가지 이상의 사고발생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추진내용이 상이하므로 약물과 놀이용품, 화재 2가지 분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라. 중점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중점분야별로 모두 76개 추진과제가 실시되었는데, 첫째, 분야별 추진과제가 적절하지 못한 분류가 적용되고 있다. 교통안전대책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차량제도 개선으로만 과제가 치중되어 있어 정책 대상 아동의 연령과 연계지어 볼 때 청소년을 위한 사고예방 과제가 추진되지 못했다. 아동 관련시설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분야 간 중복과제로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추진과제에 있어서 법·제도 개선이 마련되지 못한 분야가 존재하고 있었고,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 관련, 안전대책 추진체계 분야는 분야에 맞지 않는 과제가 설정되어 있어 세부 추진내용의 재분류 및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별로 추진과제간의 비중이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린이통학차량제도 개선은 교통안전 분야의 큰 틀 속에 있는 하위주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이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미아찾기 대책은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부처에 따라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고 있어 적절성이 낮다.

고 보여 진다. 안전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추진과제가 여러 가지 세부추진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대상별 안전교육 실시내용으로 재분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단기와 중장기 과제가 혼재되어 있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5개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부추진과제는 1회성, 단 년에 걸친 사업으로 구성되어진 경우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에서 캐릭터 개발은 단 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안전현장,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역시 단 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넷째, 세부추진과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큰 목표는 있지만 세부추진과제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목표와 세부추진과제의 목표 설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이후 세부추진과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세부추진과제들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 마. 행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행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은 부처 간의 협력이나 전달체계상의 협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대책이라는 의미는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미아찾기, 불량식품방지 분야는 부처 간의 협조체계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상당수의 분야나 세부추진과제는 부처 간의 사업을 협력하고 조정된 결과라기보다는 각 부처의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경향이다. 이는 세부추진과제 자체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 2. 노력 평가

「아동안전종합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13개 부처가 「아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안전, 추락사고 대책, 아동학대·폭력방지, 익사사고 대책, 불량식품 방지, 미아찾기,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 등은 세부추진과제의 추진률이 높은 반면 어린이통학차량 제도 개선,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 관련, 안전대책 추진 체계의 세부과제는 수행되지 못한 과제가 존재하여 분야별 추진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 3. 효과성 평가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효과성은 대책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아동 사고 사망률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 718명으로 2002년에 비해 40.6%가 감소하여 대책의 목표치인 50%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감소율을 보여 「아동안전종합대책」이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0년 14.8명에서 2006년 7.9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안전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과 과제가 수행된 교통사고에서 2002년 594명에서 2005년 337명으로 괄목할만한 감소를 보여 교통안전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2002년 134명에서 67명으로 큰 감소를 가져와 추락사고 대책의 효과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자료와 정책 대상 및 일반인의 의식개선 향상을 알 수 있는 지수가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추진과제별 실적 외에는 계량적 자료가 없어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수개발과 더불어 관련 자료의 생산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제 2 절 분야별 평가

### 1. 교통안전대책

교통안전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및 단속강화 중심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한정적이지만 전달체계의 적절성은 높으며, 노력 및 효과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가. 적절성 평가

교통안전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 정비보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보호·단속 활동 강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용품 개발 및 환경 정비,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교육 및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사고 발생률은 감소하여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린이의 연령단계에 따른 대책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아동의 연령단계에 있어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 단계로 나누어 각 대상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 추진과제의 실시는 2003년 당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경찰청에서 주도하다가 2004년 자특별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어 추진되어, 2007년 현재 2008년 이후 5개년 개선사업을 수립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반면에 단속과 관련되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안전관련 주요부처인 경찰청·행정안전부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국토해양부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된 사업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부처간 편차를 보였다.

## 나. 노력 평가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 제도 및 보호 장치의 개선 및 마련, 지도 점검 및 단속 활동 강화, 아동안전용품 개발 및 보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통안전 제도 및 보호 장치의 개선 및 마련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6세 미만 어린이 승차 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착용을 의무화시켰다. 지도 점검 및 단속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및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적치물 정비,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담당제 구축,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실시하였다. 아동안전용품 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는 반사재 용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기존 시설 정비보강

-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된 이후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함.
- '03년도의 개선사업은 경찰청이 추진하였으나 '03년 5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됨. 또한 '06년 12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07년부터 균특사업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여건을 마련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총 7,332개소를 대상으로 총 1조 5,15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예정임.
- 그 결과 '03년부터 '06년까지 총 3,069개소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07년에는 1,024개소를 개선하여 총 4,093개소가 개선 완료될 예정임.

〈표 4-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

(단위: 개, 억원)

| 년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개선지점수    | 487          | 753            | 847            | 982            | 1,024          |
| 사업비      | 776<br>(388) | 1,268<br>(634) | 1,444<br>(722) | 1,412<br>(706) | 1,822<br>(911) |
| 전년대비 증가수 | -            | △266           | △94            | △135           | △42            |

##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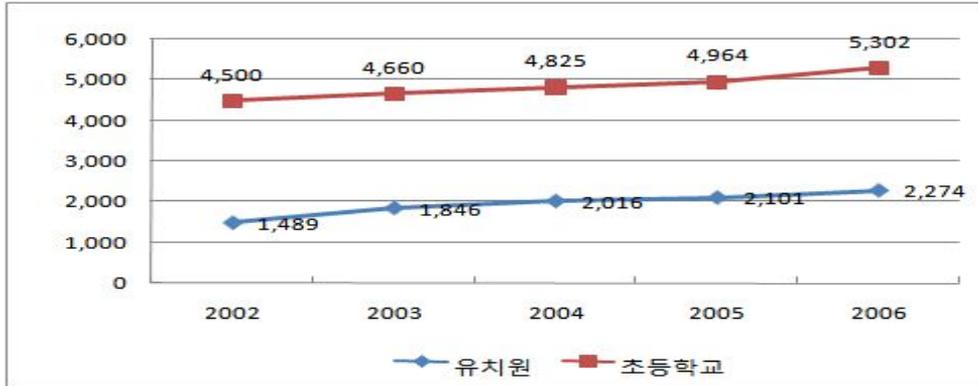
- 1995년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지정범위를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한정하였으나, 2005년 5월 31일에 동 규칙을 개정하여 지정범위를 특수학교 및 일정규모 이상(보육원생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였음.
-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마다 3~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2006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의 증가율을 보임(2006. 6. 1 개정된 규칙 시행).

〈표 4-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초등학교 | 4,277 | 4,500 | 4,660 | 4,825 | 4,964 | 5,302 |
| 유치원  | 1,423 | 1,489 | 1,846 | 2,016 | 2,101 | 2,274 |
| 특수학교 | -     | -     | -     | -     | -     | 49    |
| 보육시설 | -     | -     | -     | -     | -     | 516   |
| 총 계  | 5,700 | 5,989 | 6,506 | 6,841 | 7,065 | 8,141 |

[그림 4-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추이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가중제 도입검토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자동차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낮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벌점가중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경찰청은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6세 미만 어린이 뒷좌석 승차 시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 어린이가 승용차 뒷좌석 승차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를 과태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과태료)의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임.

## 5)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담당제 구축

- 1학교 1경찰관 제도는 2003년 6월 2일부터 시행하여 2007년 6월말 현재 5,598개 교에 7,273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학교 1소방관 제도 역시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07년 6월 기준 9,244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 '04년 1,592,759명, '05년 3,573,326명, '06년 4,700,000명.

## 〈표 4-3〉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제도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학교 1경찰관제 | 5,150(8,553) | 5,177(5,421) | 5,342(5,981) | 5,618(7,268) | 5,598(7,273) |
| 1학교 1소방관제 | 8,802(8,802) | 6,477(6,484) | 6,992(7,000) | 9,008(8,943) | 9,244(9,205) |

##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05. 1월에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주요기능을 명시하고 '06. 4월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함: 취약보육 우선대상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우선 의무화.
- '06. 4월 운영위원회 자격 및 심의사항 등 세부기준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의무설치 대상 중 92.8% 설치됨.

## 7)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활동 강화

-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4일).
-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8)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주로 개학기간인 3월과 9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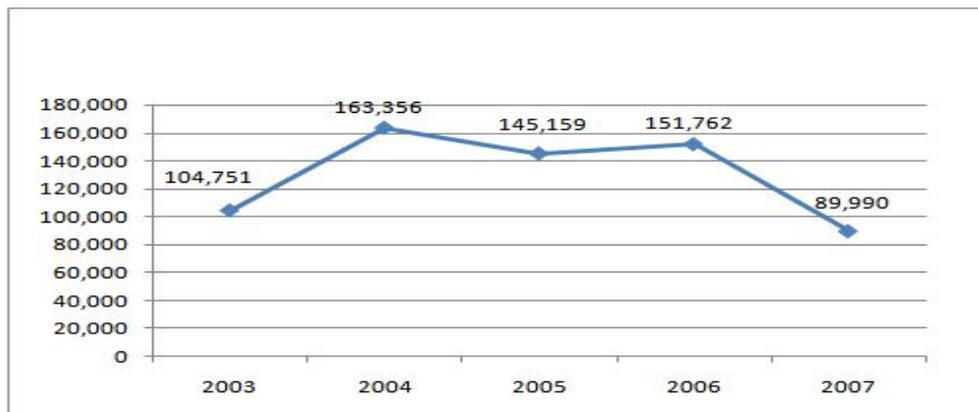
〈표 4-4〉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실적

(단위: 건)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단속건수 | 104,751 | 163,356 | 145,159 | 151,762 | 89,990 |

주: 2007년의 경우 6월말 기준임.

[그림 4-2]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추이



9)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 등 정비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였음.
-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정비는 행정지도 및 강제정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였

음: 2006년 총 36,624건(자율 26,221건, 강제 10,403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1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였음(과태료 징수 수입 128,982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음.

〈표 4-5〉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적치물 등 정비현황

(단위: 건)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 단속건수 | 18,869 | 19,159 | 58,376 | 39,749 |

[그림 4-3]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적치물 정비 추이



#### 10) 반사재 용품 개발 및 보급

- 야간에 보행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어린이 안전 목걸이 및 야간반사 헬멧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음.
- '03년도에는 어린이 안전 목걸이 30,000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04년부터는 어린이 안전헬멧을 보급하기 시작하여 '07년까지 총 7만 4천개의 안전헬멧을 보급할 예정임.

〈표 4-6〉 반사재 용품 보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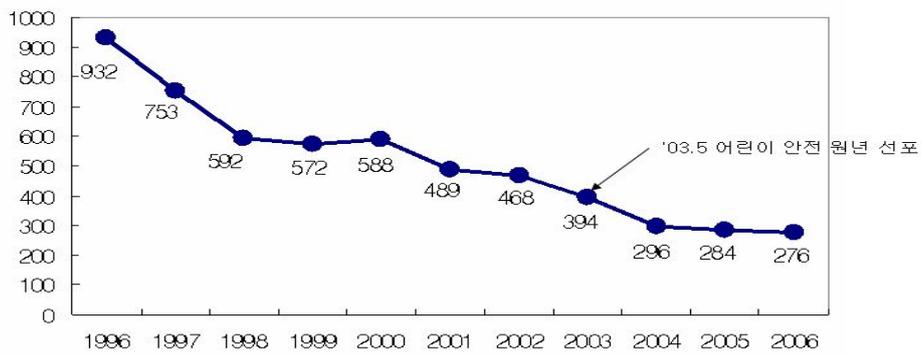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보급개수 | 30,000 | 16,000 | 18,000 | 20,000 | 20,000 |

다. 효과성 평가

교통안전 대책의 효과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률로 설정하였다.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수립 이후 사망자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림 4-4]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수립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어린이(14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 뿐만 아니라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2년에 비해 약 4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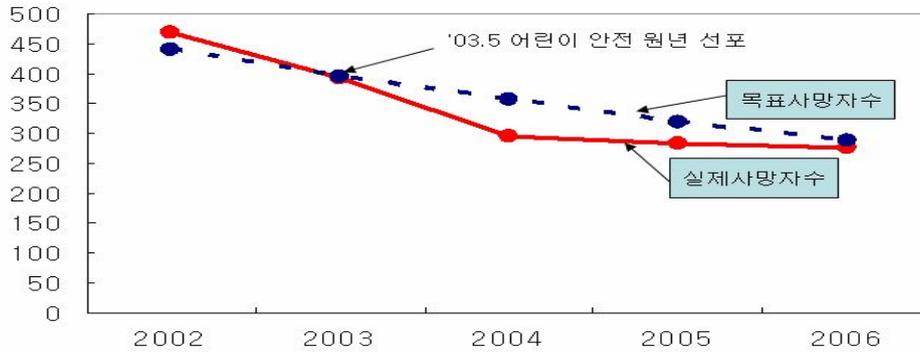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건수                   | 23,301 | 24,209 | 22,226 | 20,495 | 19,223 |
| 사망                   | 468    | 394    | 296    | 284    | 276    |
| 부상                   | 27,135 | 29,435 | 27,431 | 25,314 | 23,880 |
| 사망자감소율<br>(2002년 대비) | -      | ▽15.8  | ▽36.8  | ▽39.3  | ▽41.0  |

자료: 경찰청 통계자료, 2007.

그리고 '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수립 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 낮추어 2001년의 1/2수준까지 감축시킨다는 목표 역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4년도에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년도에 비해 266개소가 증가한 753개소를 대상으로 [그림 4-5]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대비 실제 추이.

[그림 4-5]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대비 실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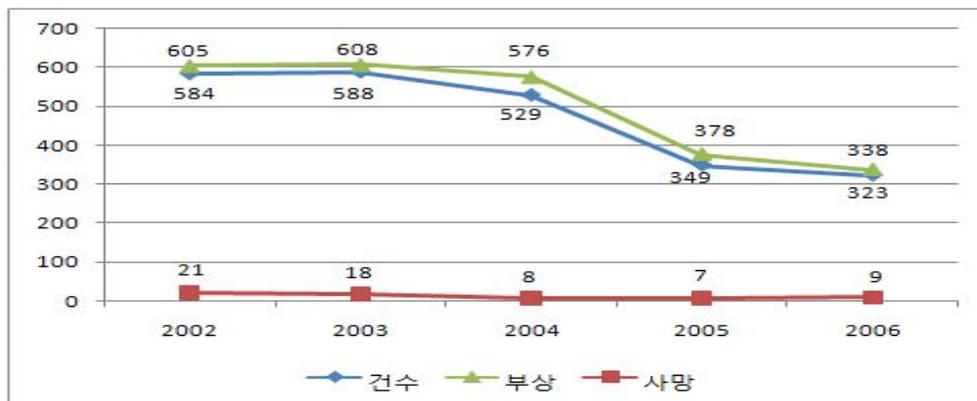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역시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2년 대비 약 44.6% 정도 감소하였다.

〈표 4-8〉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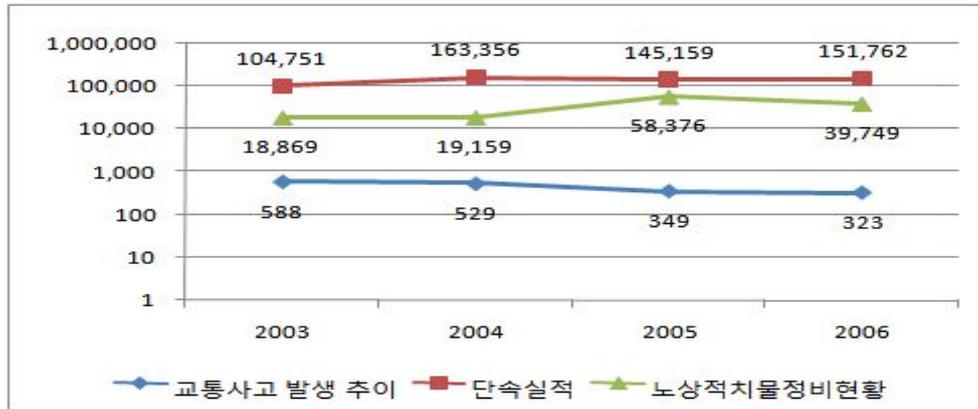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건수                    | 584  | 588  | 529   | 349   | 323   |
| 사망                    | 21   | 18   | 8     | 7     | 9     |
| 부상                    | 605  | 608  | 576   | 378   | 338   |
| 발생건수감소율<br>(2002년 대비) | -    | △0.7 | ▽9.42 | ▽40.2 | ▽44.6 |

[그림 4-6]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과 노상적치물 정비현황과 연계지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실적이 높은 2005년도에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강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적치물 정비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7]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추이



사고발생현황만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로 총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인 교통안전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3.1명으로 나타나 영국(1.1명), 일본(1.1명), 독일(1.3명), 프랑스(1.3명)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또한 OECD 회원국의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1.8명)보다 높은 상태이다(아래 표 참조).

〈표 4-9〉 OECD 가입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총 28개국, 2005년 기준)  
(단위: 명, 위)

| 국가      | 인구      | 교통사고사망<br>자수 | 인구10만 명당<br>사망자수 |    | 어린이(0~14세) 10만<br>명당 사망자수 |    |
|---------|---------|--------------|------------------|----|---------------------------|----|
|         |         |              | 사망자수             | 순위 | 사망자수                      | 순위 |
| 네덜란드    | 16,306  | 750          | 4.6              | 1  | 1.0                       | 4  |
| 스웨덴     | 9011    | 440          | 4.9              | 2  | 0.6                       | 3  |
| 노르웨이    | 4,606   | 224          | 4.9              | 2  | 1.2a                      | 7  |
| 영국      | 58,485  | 3,201        | 5.5              | 4  | 1.1                       | 5  |
| 스위스     | 7,415   | 409          | 5.5              | 4  | 1.2                       | 7  |
| 덴마크     | 5,416   | 331          | 6.1              | 6  | 1.3                       | 9  |
| 일본      | 127,286 | 7,931        | 6.2              | 7  | 1.1                       | 5  |
| 아이슬란드   | 300     | 19           | 6.3              | 8  | 0.0                       | 1  |
| 독일      | 82,501  | 5,361        | 6.5              | 9  | 1.3                       | 9  |
| 핀란드     | 5,237   | 379          | 7.2              | 10 | 2.3                       | 20 |
| 오스트레일리아 | 20,340  | 1,637        | 8.1              | 11 | 1.9                       | 14 |
| 아일랜드    | 3,979b  | 335b         | 8.4b             | 12 | 1.9b                      | 14 |
| 프랑스     | 60,561  | 5,318        | 8.8              | 13 | 1.3                       | 9  |
| 캐나다     | 32,271  | 2,925        | 9.1              | 14 | 1.8                       | 13 |
| 오스트리아   | 8,233   | 768          | 9.3              | 15 | 1.9                       | 14 |
| 이탈리아    | 57,888a | 5,625a       | 9.7a             | 16 | 1.4a                      | 12 |
| 뉴질랜드    | 4,098   | 405          | 9.9              | 17 | 3.5                       | 26 |
| 스페인     | 43,477  | 4,442        | 10.2             | 18 | 1.9                       | 14 |
| 벨기에     | 10,446  | 1,089        | 10.4             | 19 | 2.1                       | 19 |
| 룩셈부르크   | 451a    | 50a          | 11.1a            | 20 | 0.0a                      | 1  |
| 포르투갈    | 10,570  | 1,247        | 11.8             | 21 | 1.9                       | 14 |
| 체코      | 10,221  | 1,286        | 12.6             | 22 | 2.7                       | 22 |
| 헝가리     | 10,098  | 1,278        | 12.7             | 23 | 2.4a                      | 21 |
| 슬로베니아   | 2,003   | 258          | 12.9             | 24 | 3.5                       | 26 |
| 한국      | 48,294  | 6,376        | 13.2             | 25 | 3.1                       | 25 |
| 폴란드     | 38,157  | 5,444        | 14.3             | 26 | 2.7                       | 22 |
| 미국      | 296,410 | 43,443       | 14.7             | 27 | 3.5a                      | 26 |
| 그리스     | 11,083  | 1,658        | 15.1a            | 28 | 2.7a                      | 22 |
| 평균      | 35,184  | 3,665        | 9.3              |    | 1.8                       |    |

자료: OECD, IRTAD, 2007.4.

주: 2004년, b: 2003년.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많은 곳의 어린이 관련 교육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1,248개소 지정 이후 매년 평균 689개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2006년 현재 총 8,141개소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대상지점 수는 16,202개소(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포함)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약 50.2%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설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2006년)

(단위: 개소, %)

| 구분   | 지정대상                | 지정현황  | 지정률  |
|------|---------------------|-------|------|
| 초등학교 | 5,733 <sup>1)</sup> | 5,302 | 92.5 |
| 유치원  | 8,290 <sup>1)</sup> | 2,274 | 27.4 |
| 특수학교 | 143 <sup>1)</sup>   | 49    | 34.3 |
| 보육시설 | 2,036 <sup>2)</sup> | 516   | 25.3 |
| 총계   | 16,202              | 8,141 | 50.2 |

주: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 여성부, 2006년 보육통계.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이 시행된 1996년에 초등학교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정률이 미비한 이유는 유치원생의 등·하교가 도보가 아닌 통학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칙이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연도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04년과 '06년도에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입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자금이 배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 기간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보여 진다.

〈표 4-1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추진계획 | 487   | 901  | 847   | 1,004 | 1,024 |
| 추진실적 | 487   | 753  | 847   | 982   | 추진중   |
| 달성률  | 100.0 | 83.6 | 100.0 | 97.8  | -     |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보다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개소는 점차 증가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정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 내에는 도로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칼라포장만을 설치할 뿐 필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표 4-12〉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 m)

| 구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br>(미지정필요학교) | 어린이보호시설   |             |                |                 |
|----|----------------------------|-----------|-------------|----------------|-----------------|
|    |                            | 미설치<br>개교 | 과속방지턱<br>개소 | 미구분 보.차도<br>개소 | 보.차도 구역<br>연장거리 |
| 서울 | 546                        | 191       | 432         | 256            | 41,000          |
| 부산 | 273(7)                     | 96        | 178         | 66             | 7,830           |
| 대구 | 191                        | 50        | 67          | 64             | 9,125           |
| 인천 | 185(16)                    | 75        | 136         | 46             | 6,825           |
| 울산 | 86                         | 71        | 76          | 84             | 15,710          |
| 경기 | 910(4)                     | 350       | 525         | 286            | 38,165          |
| 강원 | 167(47)                    | 149       | 274         | 135            | 24,685          |
| 충북 | 220(7)                     | 123       | 226         | 78             | 17,350          |
| 충남 | 392(7)                     | 181       | 235         | 150            | 34,852          |
| 전북 | 304(7)                     | 199       | 202         | 207            | 48,631          |
| 전남 | 509(10)                    | 286       | 290         | 271            | 52,000          |
| 경북 | 341                        | 227       | 299         | 199            | 47,250          |
| 경남 | 338(42)                    | 320       | 708         | 240            | 41,370          |
| 제주 | 97                         | 97        | 143         | 58             | 6,800           |
| 전국 | 4,559(147)                 | 2,415     | 3,791       | 2,140          | 391,593         |

자료: 한국생활안전연합(2005),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설치만 했을 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05년 수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정 속도인 3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관측되었고,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체 차량의 약 47.6%가 6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하였다.<sup>1)</sup>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아울러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 및 주변 교통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운영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도변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된 보호구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본선구간의 제한속도가 60km 또는 80km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전방에 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가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충분히 감속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물론 보호구역 전방에 보호구역 예고표지가 설치되긴 하지만 제한속도를 점차 감소시키는 전이구간이 없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 과속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보·차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통학로를 따라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활동이 매년 실시되었지만, 주로 월 1~2회 정도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5년간 실시해 온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사업은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비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단속 결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1) 한국생활안전연합(2005),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 2.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대책은 총 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추진된 사항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만 과제의 대다수가 실제로 추진되어 있지 않아 노력 및 효과성은 매우 부정적이며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대책이다.

### 가. 적절성 평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대책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중 지입차량·유상운송 등 합법화 문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항 규제 및 단속강화,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교육 및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대책은 대부분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며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과제 내용면에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내용상 적절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체계 및 행정체계 미흡으로 인하여 전달체계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나. 노력 평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대책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및 보호 장치의 개선, 지도점검 및 단속 활동 강화,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홍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에 있어서는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 1) 어린이 통학버스 중 지입차량·유상운송 등 합법화 문제

-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05. 7 제도개선은 장기과제로 검토하되, 우선 실행가능 부분을 분석하여 제한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함.
-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이 「학원 및 보육시설 수송차량 제도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 검토함.

##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 '06. 8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부처 협의 결과 안전기준 강화 시 오히려 통학차량 보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정책 우선시행 필요 의견을 제시함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는 '05.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며 통학차량 보급 지원정책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여건이 성숙될 때 현재 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 도입 추진 가능함.

## 3) 보육시설,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항 규제

- 경찰청 중장기과제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험 가입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 '06. 6월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대상 조건 중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완화함.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사항은 운영관리 문제로 인·허가시의 규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추진 불가하여 '07. 7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도입 추진을 건의하였음.

## 4)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국민계도 및 단속강화

-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통학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임의교육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하여 신청자에 한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음.
- 운전자의 부주의 및 난폭운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년마다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05년까지 총 20,241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07년에는 7~9월 중 약 33,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다. 효과성 평가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05년에 129건, '06년에 12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은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05년도부터 파악할 수 있어 추이를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며 다만 2005년도와 비교하여 2006년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어린이들의 부주의, 지도교사 미탑승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내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1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발생  | 사망자 | 부상자 |
|-----------|-----|-----|-----|
| 2005      | 129 | 11  | 195 |
| 2006      | 120 | 13  | 194 |
| '07년 1~3월 | 20  | 5   | 17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교육이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어 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4-1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03   | 2005   | 2007(예정) |
|-----|--------|--------|----------|
| 교육인 | 13,970 | 20,241 | 33,475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도장에 승강구, 경광등, 후사경, 좌석 안전띠 장치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2월 현재 전국에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수는 대략 10~20만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단지 12,452대의 차량만이 통학버스 용도로 신고 되어 약 10% 정도의 신고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

(단위: 대)

| 합계     | 학교별   |       |       |       |      | 승차정원별  |         |        |
|--------|-------|-------|-------|-------|------|--------|---------|--------|
|        | 보육시설  | 유치원   | 학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25인승미만 | 25~44인승 | 45인승이상 |
| 12,452 | 5,882 | 2,487 | 1,342 | 2,451 | 290  | 8,966  | 2,733   | 753    |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유는 통학버스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현재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학버스의 요건, 안전기준, 보호자 탑승의무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에 비해 혜택이 적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미신고 차량에 대해 보호자 탑승의무 등의 통학버스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단속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사운송행위와 노선운

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학원 버스는 유상운송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가 없는 실정임. 단, 학교나 유치원이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이 허용되어 통학버스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학원이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노선운행만 가능함. 그 결과 규모가 큰 학원의 경우라도 학원 소유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대신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지입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세학원이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입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음.

-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것임. 도로교통법 제48조의5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정기적인 교육과정 이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운전자들이 임의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통학버스 관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운전자 부주의임을 생각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3. 익사사고 대책

어린이 익사사고 대책은 총 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기준 강화, 인명구조 장비 보급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달체계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높으며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효과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적절성 평가

어린이 익사사고 대책은 구명복 및 물놀이 기구의 안전기준 강화, 물놀이 사고 등 익사사고 책임관리, 익사사고 빈발지역 집중적인 예방대책 추진, 위험 및 유명 물놀이지역 인명구조 장비 현장 비치, 민관 합동 인명구조체제 구축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기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 관리 책임 강화, 안

전장비 보급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노력 평가

어린이 익사사고 대책은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비치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등 민·관 합동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캠페인을 전개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인 대상 홍보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구명복 및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강화
- '04. 6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에서 공기주입식이 아닌 것도 물놀이기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
- 2) 물놀이 사고 등 익사사고 책임관리, 익사사고 빈발지역 집중적인 예방대책 추진, 위험 및 유명 물놀이 지역 인명구조장비 현장 비치
- '05. 7 수난구호법을 일부개정하고 '06. 11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책임강화
- '06. 2 내수면 인명사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달하여 익사사고 빈발지역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간이구조장비를 비치함.

〈표 4-16〉 안내표지판 및 간이구조 장비 비치 현황

(단위: 개)

| 구분   | 안내표지판 및 간이구조 장비 |
|------|-----------------|
| 2005 | 17,521          |
| 2006 | 2,068           |
| 2007 | 2,353           |

3) 민관 합동 인명구조체제 구축

- '04 민간자원봉사자 참여「119시민수상구조대」제도 도입(355개소, 3,579명)하여 '05년도(408개소, 4022명), '06년도(384개소, 4,229명) 확대 운영함.
- '07. 6.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제정(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 이후 배치장소 물놀이 사망자 감소(36%).

〈표 4-17〉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적

(단위: 명)

| 구분             | 배치장소   | 배치인원   | 활동실적   |         |         |
|----------------|--------|--------|--------|---------|---------|
|                |        |        | 인명구조   | 익사자 탐색  | 안전조치    |
| 2004<br>(7·8월) | 355    | 3,579  | 2,557  | 133     | 32,037  |
| 2005<br>(7·8월) | 408    | 4,022  | 2,407  | 53      | 67,211  |
| 2006<br>(7·8월) | 384    | 4,229  | 2,417  | 34      | 80,935  |
| 전년대비증감         | 5.9%감소 | 5.2%증가 | 0.4%증가 | 35.9%감소 | 20.4%증가 |

다.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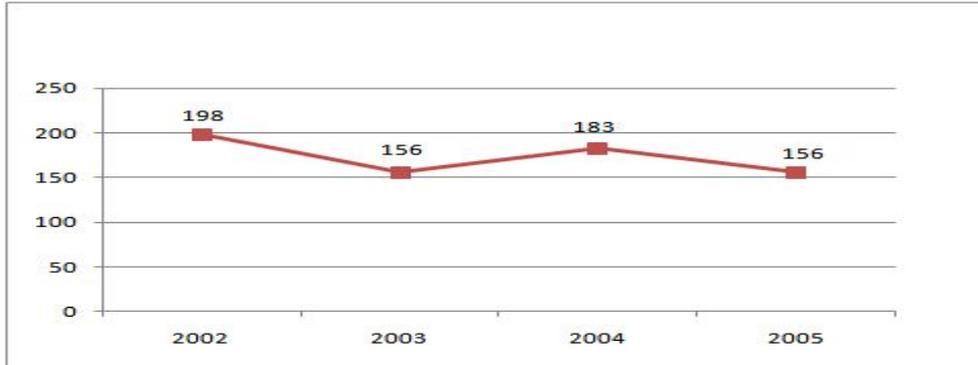
어린이 익사사고 대책의 효과성은 익사사고 사상률로 설정하였다. 2003년 156명, 2004년 183명, 2005년 156명으로 익사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2005년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 이후 배치장소 물놀이 사망자가 36% 감소되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표 4-18〉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
| 어린이익사사고 사망자 | 156  | 183  | 156  |

[그림 4-8]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추이



#### 4. 추락사고 대책

어린이 추락사고 대책은 총 7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관련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추락사고 예방 시설 설치 및 점검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총 7개의 과제 중 4개 과제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높고 노력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가. 적절성 평가

어린이 추락사고 대책은 아동관련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추락사고 예방 시설 설치 및 점검, 추락사고 예방시설 기준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추락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노력 평가

어린이 추락사고 대책은 아동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계단 및 현관 등에 대한 자동 조명장치 설치 설계를 권장하고 주택 난간의 기준 강화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놀이기구 제작기준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1)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권장

- '03. 9 건축설계·시공 시 화장실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건축 마감 재료의 종류·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한국주택협회 및 시·도 등에 통보 조치함으로써 화장실에서의 추락사고 예방 기반 마련함.

### 2) 주택 난간의 기준 강화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점검

- '03.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택난간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베란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난간 높이 강화: 110cm→ 120cm
  - 난간살 간격 강화: 15cm→ 10cm

### 3) 계단 및 현관 등에 대한 자동 조명장치 설치 설계 권장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3-314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내부 현관에는 인체감지 점멸장치를 설치하고, 계단 등 옥외에는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내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내부 등에 대하여도 설계 시 반영되어 자동 조명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와 시도에 통보함으로써 주택 추락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함.

## 4) 놀이기구 제작기준(추락방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0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4. 6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검사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하여 놀이기구 제작기준을 개선함.

## 5) 유원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영업질서 등의 유지의무 강화(관광진흥법 제32조, 규칙 39조, 별표 10) 영업자 준수사항에 운행 중 이용객 주의관찰 조항신설 및 사고보고제도 강화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 마련함.
-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안전정보 공유하고 유원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유인물 제작 배포, 유원시설 사업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적으로 고용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표 4-19〉 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 현황

(단위: 개)

| 구분   | 유원시설 | 기구  |
|------|------|-----|
| 2004 | 128  | 929 |
| 2005 | 133  | 995 |
| 2006 | 133  | 981 |

## 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안전관리 강화

- '05. 5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및 지침마련을 통해 보육시설 안전기준 및 관리방안 강화하여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05. 4 유아교육시행계획에 의거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통보를 통한 개별 유치원의 안전점검 강화.

- '06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및 활용연수를 통한 안전점검 강화.
- '05, 06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 '07 15개 보육시설 안전교육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다.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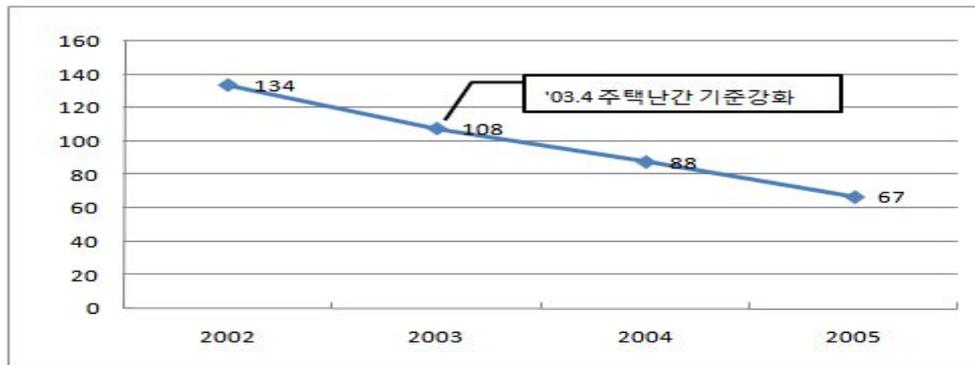
어린이 추락사고 대책의 효과성은 추락사고 사상률로 설정하였다. 어린이 추락사고는 2003년 108명, 2004년 88명, 2005년 67명으로 추락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003년에 비해 38.2%가 감소하여 추진 사업의 효과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주택난간기준 강화 제도변화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어린이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
| 어린이추락사고 사망자 | 108  | 88   | 67   |

[그림 4-9] 추락사고 사망자 추이



## 5.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은 총 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성범죄 예방 강화,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높고 노력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가. 적절성 평가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성범죄 예방 강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었다.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은 현재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내용 및 범주에 있어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 시위 시 아동 동원제한 제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와 아동학대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은 동일과제로 볼 수 있고 시위 시 아동 동원제한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아동착취 영역에 해당되어 추진과제별 적절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사례가 증가한 것을 볼 때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전달체계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44개소(07)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수집되어 매년 보고서로 발표되고 보건복지부 단독 부처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아동관계자 및 유명인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11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 및 32개 병원에서 학대아동보호팀 설치하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성범죄 예방 강화는 어린이 대상 성보호 제도 개선,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전담센터 설치 및 성폭력 수사의 활성화, 200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디오 녹화진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가 범죄자의 주소 내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성범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확대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법률적 근거 마련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적절한 과제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부처간의 협력은 미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공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부처의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동영상 개발·보급, 가·피해학생 선도 및 치료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신변보호 서비스 실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 실시,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14개 지방청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추진 내용면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되어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 나. 노력 평가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성범죄 예방 강화,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5개 부처가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1) 아동학대 예방사업 내실화 및 아동학대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 개선

○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확대, 개선되

어 왔음.

- 아동학대예방센터 증설로 학대 아동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었고, 홍보활동의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사례 증가함.
- '04. 12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였으며 '05. 7 동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06. 9 동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친권제한 기능강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06. 1월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 노력은 2003년 19개소, 2,921건, 2006년 43개소, 5,202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학대아동보호건수 증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함.

〈표 4-21〉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 및 학대아동보호건수

(단위: 개소, 건)

| 구분   |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 | 학대아동보호건수 |
|------|--------------|----------|
| 2003 | 19           | 2,921    |
| 2004 | 38           | 3,891    |
| 2005 | 39           | 4,633    |
| 2006 | 43           | 5,202    |

- 관계자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아동학대상담원 보수교육 및 사정척도 교육, 1391 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공익광고 등 실시 및 유명 연예인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음.

## 2)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사업은 여성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음.
-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

- 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 연수 ('04년 153명, '05년 314명, '06년 1,546명).
- 각 급 학교 교장·교감대상 성보호교육 실시 ('05년 2,115명, '06년 3,405명).
- '06.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성매수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의 근거규정 마련하고 성범죄 가해청소년 성폭력수강명령대상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함.
  - 성범죄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 실시('03년 15명, '04년 48명, '05년 38명, '06년 137명).
- 성범죄피해청소년 대상 무료법률지원단 운영하여 성범죄 피해 청소년 보호활동 ('04년 368건, '05년 132건).
-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3개소 설치 운영하고 아동성폭력방지전담센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전국센터 연합 워크숍 개최함.
-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이 담긴 리플렛을 통한 홍보 실시.

3) 어린이 대상 성보호 제도개선

- 어린이 대상 성보호 제도개선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어린이 대상 성보호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 '03. 저위험군 재범방지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신상공개대상자 중 일정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 실시.

〈표 4-22〉 저위험군 성범죄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 실시

(단위: 명)

| 회차   | '04.상반기 | '04.하반기 | '05.상반기 | '05.하반기 | '06.상반기 | '06.하반기 | '07.상반기 |
|------|---------|---------|---------|---------|---------|---------|---------|
| 교육이수 | 117     | 145     | 197     | 223     | 188     | 162     | 137     |

- '06.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72회 5,753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함.

- '06.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제한 청소년관련교육 기관 및 기간 확대, 고위험군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 신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고소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위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07.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열람기간, 열람대상 및 열람권자 확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 및 제한기간(5년→10년)확대, 청소년성폭력범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죄 처벌규정 신설,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친권상실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 가능,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부과 규정 신설,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홍보영상물 배포의무 규정 신설, 청소년성범죄관련 발생추세, 동향 등 연 2회 공표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함.

〈표 4-2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단위: 명)

| 회차 | 제6차('04.7.14) | 제7차('04.11.24) | 제8차('05.6.20) | 제9차('05.12.19) | 제10차('06.5.22) | 제11차('07.4.24) | 제12차('07.4.24) |
|----|---------------|----------------|---------------|----------------|----------------|----------------|----------------|
| 공개 | 553           | 557            | 532           | 512            | 533            | 494            | 485            |

#### 4)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음.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망을 구축하고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학기초 초·중·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 1:1 멘토링 사업 실시, 「배움터지킴이」각급 학교에 배치(전국 204개교 251명), 비상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시범운영 실시(82개교 15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지원(이용인원 54명), 학교폭력 가·피해자를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폭력 「SOS 지원단」운영을 통한 전문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별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기본생활습관 강화, 학교폭력 예방 모니터 강화를 위한 또래 상담자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음.

- 경찰청에서는 '05년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학교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05. 3. 4 ~ 5. 31, 총 1,961건 15,500명의 자진·피해신고 접수, 가해학생 중 자진 신고 학생 8,610명 불입건선도, 피해학생 총 4,295명 서포터 지정 운영 등 보호 조치, 폭력서클 752개 해체.
  - '06. 3. 13 ~ 5. 31, 총 2,385건, 13,756명 신고 접수, 자진신고 가해학생 등 총 4,088명 불입건선도, 피해신고 학생 2,210명 서포터 지정 운영 등 보호조치, 일진회 등 폭력서클 190개 해체.
  - '07. 3. 12 ~ 6. 11, 총 1,133건, 7,059명 자진신고 접수, 자진신고 가해학생 등 총 6,471명 불입건선도, 피해학생 총 2,208명 서포터 지정 운영 등 보호조치, 폭력서클 195개 해체.

〈표 4-24〉 학교폭력 단속 현황

| (단위: 건, 명) |       |       |
|------------|-------|-------|
| 구분         | 단속건수  | 검거    |
| 2005       | 2,329 | 7,173 |
| 2006       | 1,551 | 4,914 |

- '06. 12 14개 지방청별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개소를 완료하여 수사·의료·법률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 효과성 평가

아동학대·폭력방지 대책의 효과성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어린이 성범죄율, 학교폭력 발생률 등으로 설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증가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일반인, 신고의무자의 인식이 향상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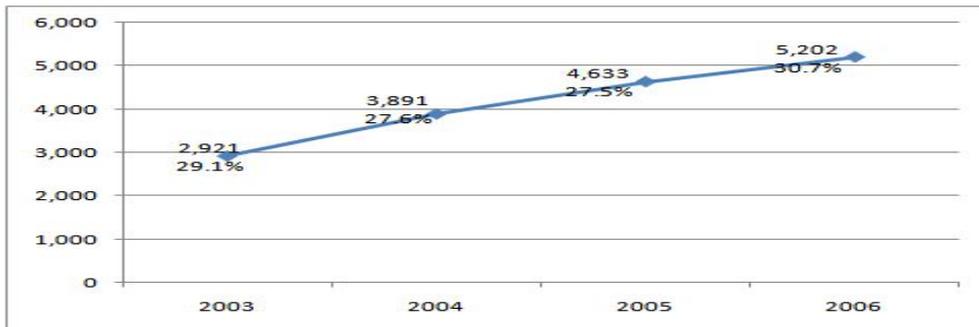
다고 판단된다.

〈표 4-25〉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단위: 건수, %)

| 구분   | 아동학대 신고건수 |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
|------|-----------|------------|
| 2003 | 2,921     | 29.1       |
| 2004 | 3,891     | 27.6       |
| 2005 | 4,633     | 27.5       |
| 2006 | 5,202     | 30.7       |

[그림 4-10]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아동 성폭력 예방사업은 성폭력 가해청소년이 감소하고 피해자가 감소하고 있어 예방사업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26〉 성폭력 가해청소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년 7월 |
|----|-------|-------|-------|----------|
| 인원 | 1,165 | 1,490 | 1,329 | 1,087    |

〈표 4-27〉 교정기관 수용 내역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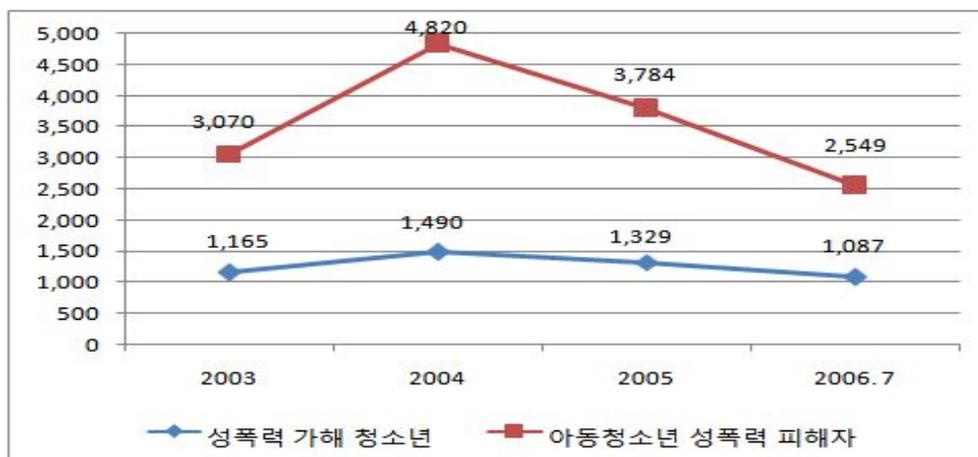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7월말 |
|---------------|------|------|------|-----------|
| 소년원(보호소년)     | 87   | 114  | 85   | 77        |
| 소년분류심사원(위탁소년) | 485  | 465  | 407  | 238       |
| 계             | 572  | 579  | 492  | 315       |

〈표 4-28〉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년 7월 |       |
|----|--------|-------|-------|----------|-------|
| 남자 | 6세 이하  | 1     | 8     | 9        | 5     |
|    | 7-12세  | 28    | 16    | 30       | 13    |
|    | 13-15세 | 19    | 27    | 17       | 16    |
|    | 16-20세 | 43    | 46    | 63       | 38    |
|    | 소계     | 91    | 97    | 119      | 72    |
| 여자 | 6세 이하  | 149   | 155   | 145      | 82    |
|    | 7-12세  | 464   | 542   | 554      | 386   |
|    | 13-15세 | 546   | 1,068 | 647      | 488   |
|    | 16-20세 | 1,820 | 2,958 | 2,319    | 1,521 |
|    | 소계     | 2,979 | 4,723 | 3,665    | 2,477 |
| 총계 | 3,070  | 4,820 | 3,784 | 2,549    |       |

[그림 4-11] 성폭력 가해청소년 및 피해청소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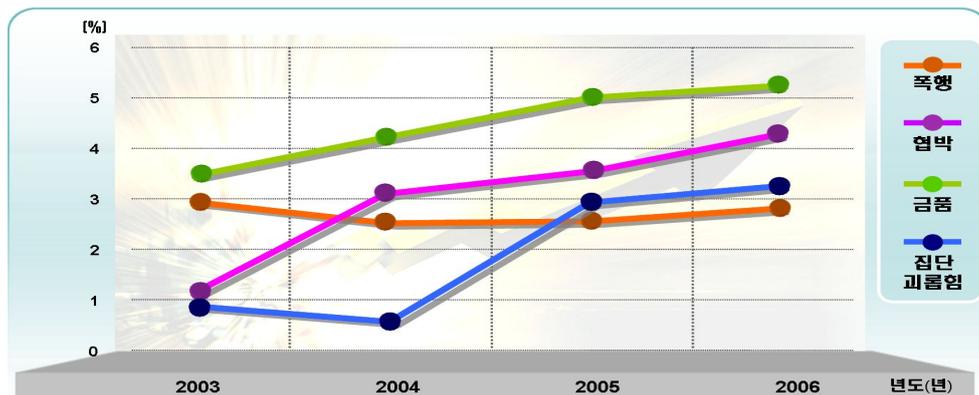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진한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전체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교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12]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현황



[그림 4-13]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현황



## 6.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은 총 9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사고 예방, 아동관련 시설 안전관리 강화, 약물사고 예방, 놀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총 9개의 과제 중 3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높고 노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효과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가. 적절성 평가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 대책은 화재사고 예방, 아동관련 시설 안전관리 강화, 약물사고 예방, 놀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었다.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 대책은 과제의 각 사업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관련 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추락사고 대책의 세부추진과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추락사고 대책에 포함되었다면 범주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는 현재 아동사고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제거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보이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문화관광체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역경제부 4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통합 매뉴얼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활용한 부분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4가지 분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노력 평가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은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안전시설 장치 의무화 등 많은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어린이집,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 방염처리 제품 사용 의무화
- '04.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07. 5.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 방염처리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2) 학교시설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 '04.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소방검사 시 시설 및 방화관리 업무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화재 발생 시 초기에 경보·진압함으로써 어린이 화재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05 청소년수련시설 바로바로 보수단 운영하여 자연권 시설 267개소 중 60개 시설을 보수하고 「청소년수련시설안전등급제」를 시행하여 자연권시설 점검 및 5단계에 걸친 안전도 등급 실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함.

〈표 4-29〉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 구분   | 추진실적  |
|------|---|
| 2003 | 자연권시설 안전점검- 100개소<br>안전운영컨설팅- 생활권시설 50개소                      |
| 2004 | 건축, 토목, 전기, 가스안전점검- 106개소<br>자연권시설 보수- 60개소                   |
| 2005 | 숙박형 수련시설 안전등급- 201개 시설<br>시설 보수- 60개소<br>안전프로그램 개발- 안전지원센터 운영 |
| 2006 | 전기, 가스점검- 695개소<br>시설, 건축, 소방 점검- 136개소                       |

- 4)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통합 매뉴얼 개발
  - '05.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통합매뉴얼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담당 회의를 실시하여 부처별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개발 및 보급을 완료하고 각 부처에서 시설 안전점검 시 활용하도록 함.
- 5) 화기 취급기구의 안전장치 부착 및 경고표시 강화
  - '04. 10 가스라이터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05.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가스라이터의 용기 온도를 상향 조정함.
    - 라이터 용기가 견디는 내열온도를 55℃→65℃로 상향 조정.
- 6) 내부에서 쉽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방법창 설치 권장
  - '03년도부터 전국 초·중등학교 기숙·합숙시설 방법창의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철거 및 구조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함.

〈표 4-30〉 방법창 설치현황 조사 및 개선 실적

| 구분   | 조사    | 개선                          |
|------|-------|-----------------------------|
| 2003 | 166개소 | 철거 137개소, 구조개선 21개소, 미비 8개소 |
| 2004 | 8개소   | 미비 8개소                      |
| 2005 | 8개소   | 구조개선 7개소, 미비 1개소            |
| 2006 | 4개소   | 구조개선 3개소, 미비 1개소            |

- 7)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포장 사용품목 확대
  - '03. 7.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의무화를 시행하여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이후 대상품목(20개소 38품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04. 12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를 추가함. '05. 11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실시

하여 철분,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함유 내용액제에서 경구용 의약품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아스피린 함유 경구용 의약품을 신규 대상으로 추가하고 어린이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04.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 개정하여 공산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05. 10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기준 고시하여 '05.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면 개정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및 표시의무 사항을 추가, '06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절차 및 안전마크 도안을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8)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 '04.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취제 등 3개 품목을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품목의 표시기준 마련함.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자동차용 앞면 창 유리세정액,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05.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용 공산품에서 유해화학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이 함유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을 공포하는 법정 외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신설함.
- '06.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여 신속조치제도에 적용할 유해화학물질을 폼알데하이드 등 약 45종을 선정하여 공산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예방까지 범위를 확대함.

#### 9) 장난감·놀이기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04.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용 제품 확대함.
  - 바퀴운동화, 어린이 놀이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등 6품목.
-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제·개정하여 안전검사를 강화함.
  - 유모차, 보행기, 완구 등 3품목 강화 개정 ('04. 3.)
  - 바퀴운동화, 어린이 놀이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운동용 안전모, 물놀이기구 등 8품목 제·개정 ('04. 9.).
- 소보원·시민단체 공동으로 어린이용품 시판품 조사 확대 실시하여 어린이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
  - ('04) 어린이 카시트 등 3품목→('05) 비비탄총 등 9품목.
-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자 교육 및 제품 단속을 실시함.
  - 유통업소 교육 ('04. 5. 12, '04. 10. 19, '05. 3. 18), 시·도 공무원 교육 ('05. 3. 24).
  - 시·도 불법 제품 단속 (안전검사품목: 304건 적발/20,666건 단속).
-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교육 교재 등 마련·배포.
  -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05. 5.).
  - 어린이 안전 리플렛 제작 배포 (2만부).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교육 교재 제작·배포 (시민단체, 초등학교 1,000부).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함.
  - 어린이 안전체험행사 개최 ('05. 10. 14, 초등학교 3~4학년 450명).
  -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05. 10. 21~24, '06. 10. 26~29, 완구박람회).
- '06. 1월 아동 안전취약품목을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함.
  - 대상품목: 인라인스케이트, 바퀴운동화, 자동차용 아동보호장치, 작동완구, 비비탄총, 유아용 침대 등 18개 품목.

-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제품안전지킴이단 구성·운영('06. 7.~11.)하여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함.
  - 대상품목: 어린이 놀이기구,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안전모 등 12품목.
- '06.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 제품 확대 및 안전기준 정비함(20품목→ 27품목).
  - 대상품목: [안전인증 11]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물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 침대, 비비탄총, 유모차, 보행기, 물휴지[자율안전확인 16] 안전확인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학용품, 완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쇼핑카트,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의자, 유아용삼륜차, 이륜자전거,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바퀴운동화, 어린이용귀금속 악세서리.

#### 다.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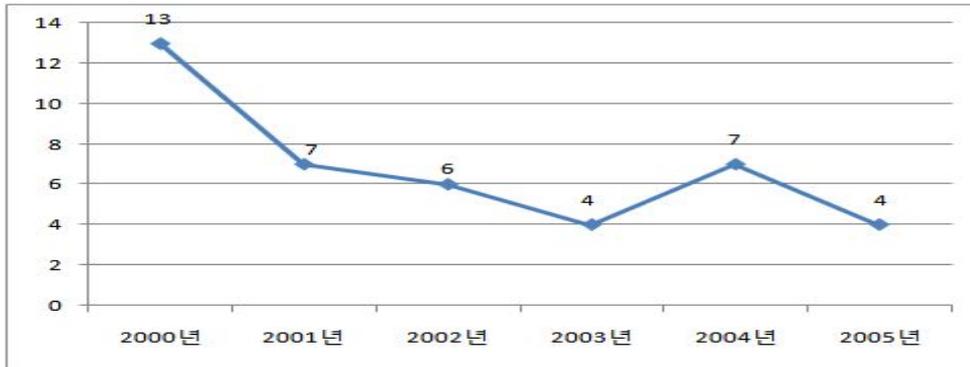
화재·약물·놀이용품 등 사고대책의 효과성은 어린이 중독사고 발생률, 아동용품 사고발생률 등으로 설정하였다. 수련시설 및 학교시설의 사고발생률은 계량적 자료가 없어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어린이 중독사고 발생률은 2004년 증가를 하다 2005년부터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 도입된 어린이보호포장용기 제도가 효과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31〉 어린이 중독사고 사망자

| (단위: 명)  |      |      |      |      |
|----------|------|------|------|------|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 어린이중독사망자 | 6    | 4    | 7    | 4    |

[그림 4-14] 어린이 중독사고 사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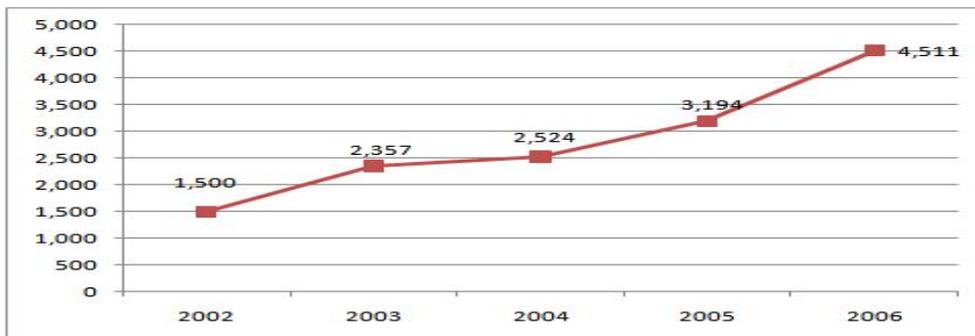
아동용품 사고발생률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현상은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32> 어린이용품 관련 안전사고

(단위: 건)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사고건수 | 1,500 | 2,357 | 2,524 | 3,194 | 4,511 |

[그림 4-15] 어린이 용품 사고건수 추이



## 7. 불량식품방지 대책

불량식품방지 대책은 총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급식 개선,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 단속강화, 식품안전교육 실시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불량식품 방지 대책은 주제가 명확하여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높고 노력과 효과성은 높게 평가된다.

### 가. 적절성 평가

불량식품방지 대책은 학교급식 개선,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 단속강화, 식품안전교육 실시로 구성하였다. 추진과제의 범주가 한정된 만큼 세부추진과제의 구체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으며 유통기간 확인 및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교육용 비디오 제작·배포, 학교위탁 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개선대책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나. 노력 평가

불량식품방지 대책은 급식개선대책 마련, 식품업자 대상 단속강화, 식품안전교육 실시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 1) 학교급식 개선

- '06. 12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하여 위탁급식 직영전환 및 급식환경 개선 등 8대 과제 3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함.
- '07. 1 학교급식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근거 마련,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마련, 직영급식, 영양관리기준 마련, 위생·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으로 급식관리체제 강화.
- '07. 1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하고 보고누락(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향조정(100→200백만 원), 보존식 보관규정 강화(72시간→7일, 보

관온도 5℃→영하18℃)하였으며 단계별 보고체계를 식중독 발생 시 동시 보고 체계로 개편하여 관리체계 강화함.

- 학교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식중독 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및 시달,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화함.

2) 불량식품제도 및 판매업자 단속강화

- 초등학교별로 학교 주변 위생지도를 담당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책임 지정하여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조리업소 상시 모니터링 실시, 2개월에 1회 이상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특별 단속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어린이기호식품 부적합률 감소함.

〈표 4-33〉 연도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조리·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단위: 건, %)

| 구분       | 점검건수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율 |
|----------|--------|--------|-------|------|
| 2003     | 3,752  | 2,877  | 875   | 23.3 |
| 2004     | 43,371 | 40,918 | 2,453 | 5.7  |
| 2005     | 56,856 | 52,082 | 4,774 | 8.4  |
| 2006     | 42,476 | 40,671 | 1,805 | 4.2  |
| 2007년 3월 | 9,065  | 8,590  | 475   | 5.2  |

〈표 4-34〉 연도별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부적합율

(단위: 건, %)

| 구분       | 수거건수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율(%) |
|----------|--------|--------|-----|---------|
| 2003     | 15,643 | 15,400 | 243 | 1.6     |
| 2004     | 10,576 | 10,417 | 159 | 1.5     |
| 2005     | 12,320 | 12,186 | 134 | 1.1     |
| 2006     | 13,200 | 13,102 | 98  | 0.7     |
| 2007년 3월 | 5,755  | 5,717  | 38  | 0.7     |

## 3) 식품안전교육 실시

- '04년부터 급식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의 위생 의식 고취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식중독 예방요령 등 식품안전교육 실시로 위생의식 함양에 노력함.

## 다. 효과성 평가

불량식품방지 대책의 효과성은 식중독 발생률 및 식품안전교육 이수률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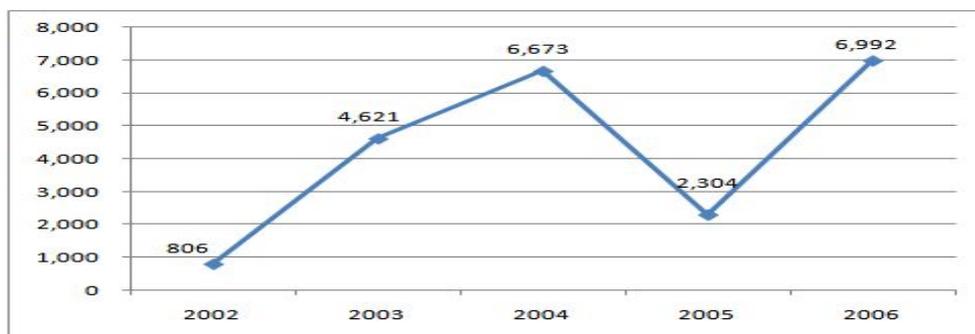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은 2003년 43건 4,130명, 2004년 56건 6,673명, 2005년 19건 2,304명, 2006년 70건 6,992명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범부처적인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하였으나 향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표 4-35〉 학교 식중독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 구 분  | 전체 발생 |       |
|------|-------|-------|
|      | 건수    | 환자수   |
| 2003 | 43    | 4,130 |
| 2004 | 56    | 6,673 |
| 2005 | 19    | 2,304 |
| 2006 | 70    | 6,992 |

[그림 4-16]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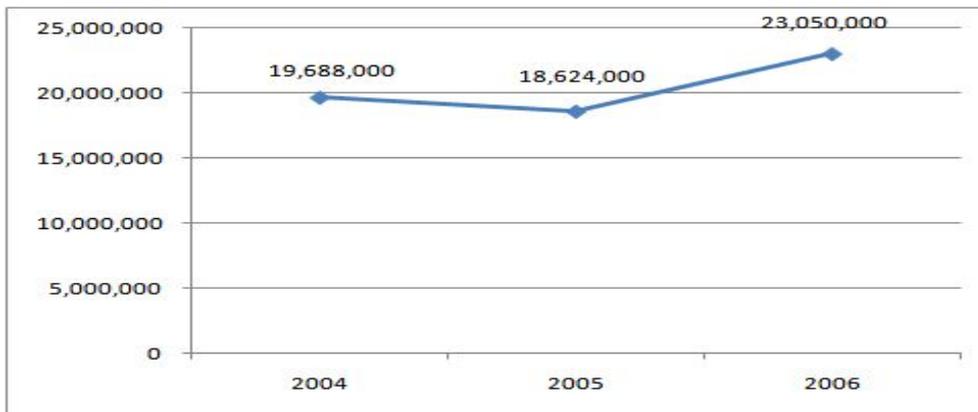
식품안전교육 실시 대상 인원은 2004년 19,688천명, 2005년 18,624천명, 2006년 23,050천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부모,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6〉 식품안전교육 실시현황

(단위: 명)

| 구분   | 2004       | 2005       | 2006       |
|------|------------|------------|------------|
| 교육인원 | 19,688,000 | 18,624,000 | 23,050,000 |

[그림 4-17] 식품안전교육 실시 현황



## 8. 미아찾기

미아찾기 대책은 총 2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아발생 예방·홍보사업, 실종아동찾기 사업이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미아찾기 대책은 주제가 명확하여 추진내용과 추진 체계의 적절성은 높고 관련법 제정 및 노력과 효과성은 높게 평가된다.

### 가. 적절성 평가

미아찾기 대책은 미아발생 예방·홍보사업, 실종아동찾기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과제의 범주가 한정된 만큼 세부추진과제의 구체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추진체계

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이 추진하였으며 미신고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종아동 찾아주기 합동점검 실시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 나. 노력 평가

미아찾기 대책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관련제도 개선, 182 실종아동찾기 센터 운영, 취약시설 점검, 앰버경고시스템 구축, 매체를 활용한 언론홍보 실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 미아발생 예방·홍보사업

- 요보호아동이 신상카드 비치 활용 및 매체를 통한 언론 홍보 실시
- '05. 11 무호적자의 호적 취득절차를 개선하여 불법양육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제거하고 '05. 12 정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미아발생 예방·홍보사업을 실시함.

##### 2) 실종아동찾기 사업

- '05. 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실종아동 등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05.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체계적인 “실종아동 등 찾기” 기틀 마련함.
- 정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하여 미아사고 발생시 대처시스템 마련함.
- 유전자활용 실종아동찾기사업에 과학적 접근방식 도입함.
  - 개요: 보호시설에 입소된 무연고아동 등과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화 한 후 상호대조.
  - 운영실적('04. 4. 3 ~ '07. 6. 30): 총 16,852건 DNA 채취, 74명 발견.
- 휴대전화 활용 실종아동찾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함.

- 개요: 실종아동의 인상착의·사진을 휴대폰에 송출하여 공개수배.
- 운영실적('04. 5. 3 ~ '07. 6. 30): 176건 발송, 15명 발견.
- 연 2회 전국 보호시설 일제점검·수색을 통해 실종아동 찾기 위해 노력함.
  - 점검내용: 유전자 채취 등 신원확인을 통한 실종아동 등 발견 및 보호시설의 실종아동법 준수여부 실태 점검.
    - 실적: '05년 이후 일제수색 5회 실시, 실종아동 등 248명 발견.
-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www.182.go.kr) 운영하여 미아찾기 예방정보 제공 및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실종아동신고·검색, 보호시설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상에 제공.
  - 342개 외부기관·단체 홈페이지와 연계 활용 중.
-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추진
  - 경찰 전산시스템 상 실종아동 사진 등 상세정보 입력·검색 가능한 신규 전산망 개발.
  - 실종아동 등 자료와 신원불상 변사자 자료(수사국 크리피스),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 구축 추진.
- 실종아동 찾아주기 전국순회 캠페인 및 실종아동발생시 온라인으로 제보·전파하여 실종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미아서포터즈 운영함.
  - '06. 11월 현재 미아서포터즈 약 31,000여명.
- 실종유괴아동 「앵버경보시스템」 구축 하여 국민의 관심 및 신고 유도함.
  - 추진경과
    - '07. 4. 9. 국토해양부·서울시와 1차 협약 체결.
    - '07. 5. 23. 방송사(KBS·KTV), 이동통신사(KTF·LGT), 금융기관(국민·한·농협·우리·기업)과 2차 협약 체결.
  - 운영체계.
    - 유괴경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의 유괴의심 실종 또는 유괴된 만 14세 미만 아동.
    - 실종경보: 실종신고 된 만 14세 미만 아동·정신지체장애인 및 치매 노인.

#### 다. 효과성 평가

미아찾기 대책의 효과성은 미아발생률 및 실종아동 발견율로 설정하였다. 미아찾기 발생률은 2004년 4,064건, 2005년 2,695건, 2006년 7,064건으로 2005년 감소했다가 2006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는 대상연령을 14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발생건수가 증가하지만 대부분이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있어 미아찾기 대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37〉 미아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연 도  | 발생건수          | 발견 현황 |              |
|------|---------------|-------|--------------|
|      |               | 보호자인계 | 미발견          |
| 2004 | 4,064(8세 이하)  | 4,063 | 1            |
| 2005 | 2,695(8세 이하)  | 2,695 | 0            |
| 2006 | 7,064(14세 미만) | 7,046 | 18(8세 이하 1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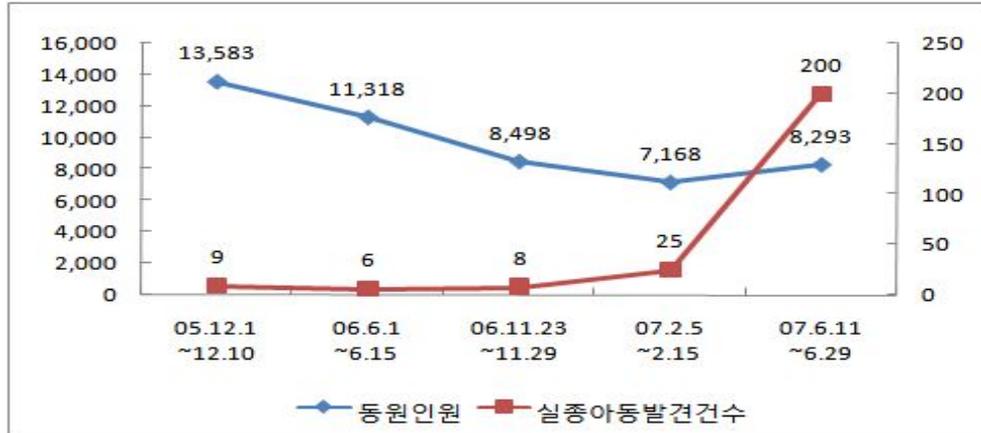
특히 실종아동과 관련하여 2005년 9명, 2006년 14명, 2007년 225명 등 실종아동 발견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제도 도입 및 시스템 구축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38〉 실종아동 발견 현황

(단위: 명)

| 수색기간                 | 동원인원   | 실종아동 발견 | 유전자 채취 |
|----------------------|--------|---------|--------|
| '05. 12. 1 ~ 12. 10  | 13,583 | 9       | 2,145  |
| '06. 6. 1 ~ 6. 15    | 11,318 | 6       | 2,222  |
| '06. 11. 23 ~ 11. 29 | 8,498  | 8       | 928    |
| '07. 2. 5 ~ 2. 15    | 7,168  | 25      | 369    |
| '07. 6. 11 ~ 6. 29   | 8,293  | 200     | 924    |

[그림 4-18] 실종아동 수색동원 인원 및 실종아동발견건수



## 9. 안전교육

안전교육 대책은 총 1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과제가 완료된 상태이다. 안전교육 대책은 부모 및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화, 교육 및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안전교육 대책은 주제가 명확하여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높고 관련법 제정 및 세부과제 추진에 따른 노력은 높게 평가되나 뚜렷한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가. 적절성 평가

안전교육 대책은 부모 및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화, 교육 및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추진과제의 범주가 한정된 만큼 세부추진과제의 구체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 교육과정 시 안전교육 내용 반영, 안전교육 시간 배정 구체화, 학급보조자 및 안전전담 장학사 안전교육 담당교사 안전교육과정 연수 의무화, 어린이 안전캠프 실시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확대를 통한 체험교육 강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추진내용면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소비자원이 추진하였으나 각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적 안전교육 대책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 역할부여를 한다면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나. 노력 평가

안전교육 대책은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내용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안전교육 내용 강조,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안전교육 시간 배정 구체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교재 개발 보급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확대 운영,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 교육과정 개편 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

- '03.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과서에 안전교육 관련 단원을 전면 보완하여 위기대처법 및 사고예방법을 중심으로 15차시 증배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강화함.
- '07.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안전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교련 교과를 '안전과 건강'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생활 속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

##### 2) 시·군·구 교육청별 학교 안전 전담 장학사 지정·운영

- '04년 16개 시·도교육청 안전교육 담당 장학사 지정 및 운영하여 장학 시 안전지도 실시함.

##### 3) 교육교재 개발·보급

- '03년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자료 및 부모교육 자료 개발 보급하여 유아 및 부모

대상 교육 실시함.

- 사례로 살펴본 안전교육을 개발하여 초, 중, 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3만 9천부 배부하여 교육 실시함.
- 초·중등학교 흡연교육 예방 및 금연교육 지도자료 개발 보급함.
  - 전국 초등학교 3만 2천부 보급.
-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자료 활용 전문직 연수.
- '05년 보육시설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교육 실시함.
- '05년~'07년에 걸쳐 초등학생, 유아, 청소년용 안전교과서를 개발·배포하여 유아 및 초·중등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함.

4) 학급보조자 연수 시 안전교육시간 배정 의무화

- '03년~'06년에 걸쳐 유치원 학급보조자 연수 시 안전교육시간 2~3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함.

〈표 4-39〉 학급보조자 연수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 교육실시 인원 | 21,521명 | 16,122명 | 18,957명 | 17,800명 |

—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활용: '04, '05, '06. 3~'07. 2.

● 활용영역.

※ 기본생활습관 반복지도.

※ 현장 체험학습 활동 보조.

※ 유아 안전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5) 안전교육 담당교사 안전교육과정 연수 의무화

- '04~'06년 교원연수 운영방향에 '학교 안전교육'에 대하여 별도의 연수과정 개설

이나 자격 및 직무연수 교육과정 과목반영을 권장하고 안전교육연수기관을 통한 교원 안전교육 연수 및 시·도 교육연수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실시하여 안전교육 담당교사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안전교육연수기관을 통한 교원 안전교육 연수.

- 연수기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04년: 초등교사 5,171명, 중등교사 3,950명.
- '05년: 유치원 교사 8,570명.

— 시·도 교육연수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 자격연수: 59개 과정 7,500명.
- 직무연수: 248개 과정 17,000명.

— 소방방재청(소방학교): '03~'04 100명.

#### 6)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시간 배정 구체화

○ '04~'0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분야별 안전교육 시간 배정을 구체화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시·군·구청장에 보고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함.

- 교통안전교육(연간 12시간 이상).
- 약물 오·남용교육(연간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교육(연간 6시간 이상).

#### 7)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확대

○ '04. 8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실시.

- 9개 시·도 13대 운영 중임: 서울,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 대전, 울산, 경기(2), 충남.
- '05년: 2,074회 629,567명 실시.
- '06년: 2,200회 630,565명 실시.

○ 안전교육실습용 기자재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제작하여 초등학교 등을 대

상으로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험교육 및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함.

8) 어린이 안전캠프 실시 확대

- 119대축제 등 안전체험행사 실시하고 한국119소년단을 운영하여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방학기간동안 수련회 실시, 안전체험 및 문화 이벤트 행사, 가족안전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캠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

〈표 4-40〉 어린이 안전캠프 참여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 개소    | 인원      |
|------|-------|---------|
| 2003 | 2,987 | 440,545 |
| 2004 | 2,676 | 480,445 |
| 2005 | 3,916 | 346,061 |
| 2006 | 3,987 | 524,681 |

9) 어린이 안전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 활성화

- '05년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어린이관을 개설 운영하여 어린이 교육용 자료 게재, 전국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어린이 교육용 자료 게재,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 등 어린이 안전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어린이관: 어린이안전뉴스 등 250편.
  - 사진전: 사고유형별 안전교육용 사진 게시.
  - 플래쉬관: 안전관련 플래쉬 공모 우수작 16편('05년도).
  -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교재 및 영상물 30편 탑재.
  - 소방게임: 소방게임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
  - 소방동요: 소방동요 113곡 탑재(동요공모 10곡).
  - 자료실: 어린이 작품공모 우수작 1,200점 등 2,094점.

## 10) 인터넷을 통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급

- 인터넷에 신속한 안전정보 게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도모함.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어린이 안전넷”을 통해 안전정보 수시 게시.
- 인터넷 소비자방송 구축을 통한 온라인 소비자 안전교육 활성화 및 효과 제고함.

## 다. 효과성 평가

안전교육 대책의 효과성은 안전교육 이수인원으로 설정하였다. 안전교육 이수율은 교육 대상에 따라 부모, 교사, 어린이로 구분하였으나 이수인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안전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자료가 없어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교육의 효과는 즉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생애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평가지표 개발 및 조사를 통해 평가 자료가 수집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 대상 안전교육은 전체 대상 교사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며 학부모인 학급보조자 안전교육 역시 매해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안전캠프 참여 어린이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육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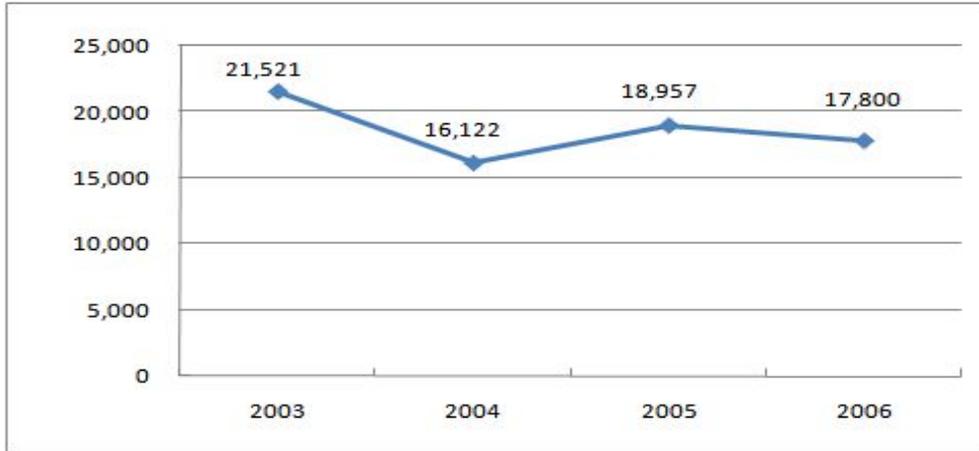
〈표 4-41〉 교원 안전교육 연수 현황

| 구분                    | 교육실시 인원                                       |
|-----------------------|---|
| 2004                  | 초등교사 5,171명, 중등교사 3,950명                      |
| 2005                  | 유치원 교사 8,570명                                 |
| 시·도 교육연수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 자격연수: 59개 과정 7,500명<br>· 무연수: 248개 과정 17,000명 |

〈표 4-42〉 학급보조자 연수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 교육실시 현황 | 21,521 | 16,122 | 18,957 | 17,800 |

[그림 4-19] 학급보조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 10.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은 총 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과제가 완료된 상태이다. 안전문화운동은 국민안전현장 제정·공포,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문화행사 개최 및 캐릭터 개발이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안전문화운동은 주제가 포괄적이고 세부추진내용의 연계성이 낮아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낮으며 노력과 효과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가. 적절성 평가

안전문화운동은 국민안전현장 제정·공포,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홍보활동 강화, 문화행사 개최가 세부추진과제로 추진되었는데 안전문화라는 주제가 포괄적이고 세부추진 과제들이 연계성 없이 시행되어 세부추진내용에 있어서도 적절성이 낮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원이 추진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적절하나 관련된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세부내용에는 일반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주력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노력 평가

안전문화운동은 국민안전현장을 제정·공포하여 안전문화 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제도마련, 안전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리보호강화를 위해 안전캠페인 실시 및 위해정보 수집 활성화를 시도하였으나 안전문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 미진하여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는 추진부처간의 협력 및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안전문화팀을 별도로 신설, 안전문화운동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된다.

##### 1) 국민안전현장 제정·공포

- '04년 국민안전현장을 제정하고 '05년부터 「안전관리현장」정신확산 국민운동 전개함.
  - 안전관리현장 실천 주간운영 (2005. 10. 31~11. 6).
  - 안전관리현장 선포기념 제1회 재난구호 종합훈련 실시.  
(11. 4,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23개 기관·단체 1,600여명참여).
  - 현장 백만 명 보급운동 전개 (마우스패드 제작 보급 등).
  - 현장 게시 지도·감독, 홍보활동 강화 등.

##### 2)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 '04. 12 15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민관협력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함.
- 재난안전시민포럼, 간담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함.
  -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함.
  - 리플릿(5종) 222,000부, 홍보물품(4종) 75,000개.
  - 안전문화 홍보영상물 제작 배부(7분용, CD 500개).
  
- 3)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04. 119안전신고센터 개설하여 언어·청각장애인에 대한 119신고경로 제공함.
  - '04년 ONE-CLICK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자신고접수시스템을 개발하고 문자용 특수번호(119) 확보함.
  - '05. 1 119안전신고센터 전용 H/W 설치하여 시·도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접수 알람시스템을 설치하고, 신고자 위치확인용 위성영상검색시스템을 설치하여 신고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함.
  
- 4)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 위해정보기관 23개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위해정보 보고기관 교육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 확대하여 소비자 대상 안전정보 제공함.
    - 위해정보 수집 건수: 2004년 8,884건, 2005년 12,411건, 2006년 17,639건.
  - 어린이 안전정책 포럼 개최, 어린이 안전캠페인 실시, On-line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안전권리 강화함.
  
- 5) 문화행사 개최 및 캐릭터 개발
  - 안전점검의 날 새로운 캠페인 문구 공모, 안전문화운동 심벌마크 활용, 안전관리 현장 실천주간 행사 실시를 통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착시킴.

## 다. 효과성 평가

안전문화운동의 효과성은 안전문화운동 참가율 및 안전문화지수로 설정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안전문화지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중요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내용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문화지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으로 119안전신고센터와 위해정보 수집건수가 증가되어 일반 시민들의 안전정보 서비스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안전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 11. 자치단체 관련

자치단체 관련분야는 총 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과제가 완료된 상태이다. 자치단체 관련분야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체험관 설립근거 마련,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준칙제정,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및 추진실태 평가, 안전시설 사업비 재원확보가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자치단체 관련은 주제가 자치단체로 한정적이지만 세부추진내용의 연계성이 낮아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낮으며 조례 및 설립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노력은 높게 나타나지만 효과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가. 적절성 평가

자치단체 관련 분야는 어린이 교통공원(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확대,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어린이 안전시설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재원 확보,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준칙 제정이 세부추진과제로 추진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제가 포괄적이고 세부추진 과제들이 연계성 없이 시행되어 세부추진내용에 있어서도 적절성이 낮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추진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적절하나 타부처간 협조 없이 이루어져서 추진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자치단체 관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노력 평가

자치단체관련 분야는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준칙 제정 등 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지나 대부분의 세부추진과제가 실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 1)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확대

- '05년 소방기본법 제5조 개정으로 인해 안전체험관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재원확보 미비로 인해 대구에만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었으며, 충북과 서울에는 안전체험관을 새로 건립하지 못하고 소방서 내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추후 체험관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으로 보임.

##### 2)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 '0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시책으로 반영하여 '05년에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따라 '06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가 개발되어 합동평가를 실시하였음. 향후 어린이 안전업무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예정임.

##### 3)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준칙 제정

- '05년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물놀이 장소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제정 지속 추진하여 현재 10개 시·도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물놀이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10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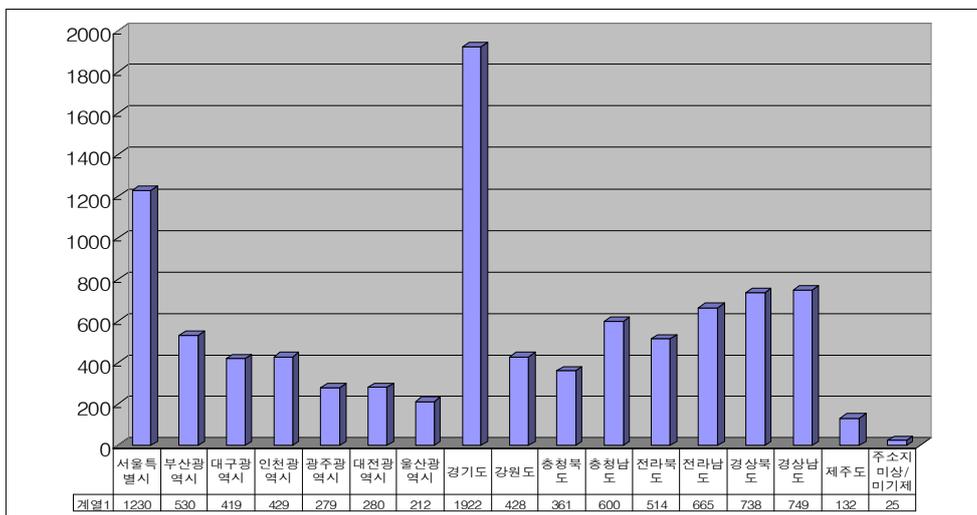
#### 다. 효과성 평가

자치단체 관련 분야의 효과성은 지역별 아동안전사고 발생률로 설정하였다. 서울 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등의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1,000명당 조사망률이 0.15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다른 도의 경우는 모두 1,000명당 0.1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도시화가 덜 진행한 시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별 아동안전사고 발생률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사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 객관적 평가지수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3〉 행정구역별 전체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2005년)  
(단위: 명, %)

| 행정구역       | 안전사고 사망자     | 전체 안전사고 사망 아동 중의 비율 |
|------------|--------------|---------------------|
| 서울특별시      | 1,230        | 12.9                |
| 부산광역시      | 530          | 5.6                 |
| 대구광역시      | 419          | 4.4                 |
| 인천광역시      | 429          | 4.5                 |
| 광주광역시      | 279          | 2.9                 |
| 대전광역시      | 280          | 2.9                 |
| 울산광역시      | 212          | 2.2                 |
| 경기도        | 1,922        | 20.2                |
| 강원도        | 428          | 4.5                 |
| 충청북도       | 361          | 3.8                 |
| 충청남도       | 600          | 6.3                 |
| 전라북도       | 514          | 5.4                 |
| 전라남도       | 665          | 7.0                 |
| 경상북도       | 738          | 7.8                 |
| 경상남도       | 749          | 7.9                 |
| 제주도        | 132          | 1.4                 |
| 주소지 미상/미기재 | 25           | 0.26                |
| 총계         | 7,698 (80.9) | 1,815 (19.1)        |

[그림 4-20] 시도별 어린이 사망사고 현황(2005)



## 12. 안전대책 추진체계

안전대책 추진체계는 총 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안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기준 개발,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추진의 합리화,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가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안전대책 추진체계는 주제가 대책추진체계로 한정적이지만 세부추진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여 추진내용의 적절성은 낮으며 국무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전달체계의 적절성은 높으나 노력과 효과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가. 적절성 평가

안전대책 추진체계는 아동 안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기준 개발,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추진의 합리화,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가 세부추진과제로 추진되었는데 안전대책 추진체계라는 주제가 포괄적이고 대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통계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점검·평가라는 세부내용은 적절하지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본부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다만 아동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세부내용의 적절성이 낮다. 향후에는 안전대책 추진체계에 있어 추진본부의 명확화, 평가를 통한 피드백, 종합계획 수립, 전달체계 확립 등이 세부추진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노력 평가

안전대책 추진체계는 아동안전통계 자료 생산 체계 구축, 아동안전사고 감소 및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스템 공유 실시, 어린이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실시내용이 평가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대책 추진체계는 아동 안전분

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기준 개발을 위한 T/F구성, 어린이보호구역 T/F구성, 어린이 안전관련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세부추진과제가 실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은 개별적으로 있는 어린이 안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인데 단순히 ‘어린이 안전넷’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세부추진과제가 원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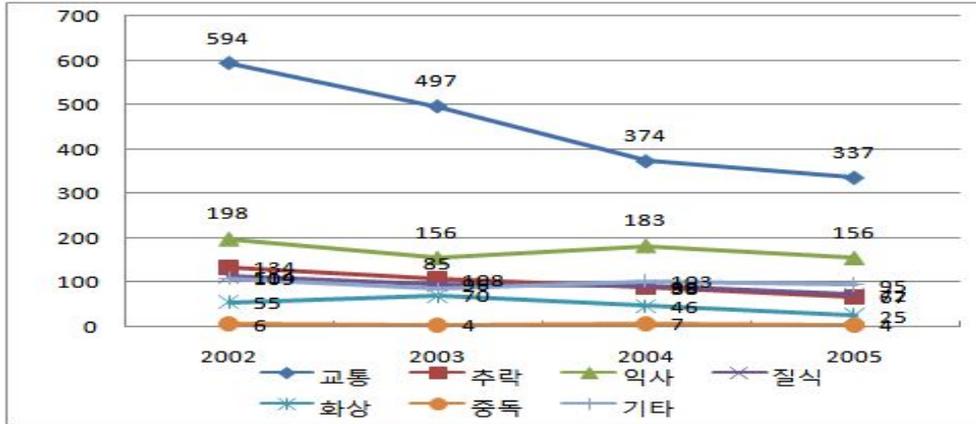
안전대책 추진체계의 효과성은 대상 아동의 연령별, 유형별 아동안전 사망률과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특히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화상사고에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대책 추진체계가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교통과 추락사고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에서는 0~4세 연령층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안전사고 감소는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10~14세 아동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4-44〉 사고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현황

(단위: 명)

| 구분   | 교통  | 추락  | 익사  | 질식  | 화상 | 중독 | 기타  | 계     |
|------|-----|-----|-----|-----|----|----|-----|-------|
| 2002 | 594 | 134 | 198 | 114 | 55 | 6  | 109 | 1,210 |
| 2003 | 497 | 108 | 156 | 96  | 70 | 4  | 85  | 1,016 |
| 2004 | 374 | 88  | 183 | 90  | 46 | 7  | 103 | 891   |
| 2005 | 337 | 67  | 156 | 72  | 25 | 4  | 95  | 756   |

[그림 4-21] 사고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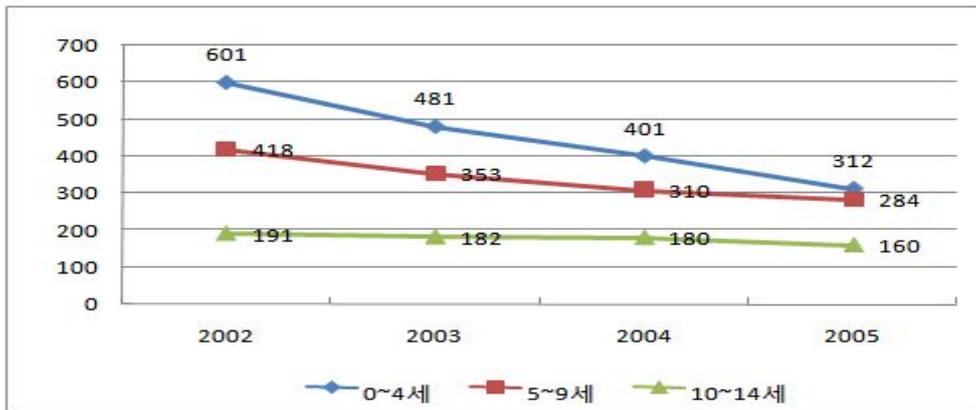


<표 4-45>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 0~4세 | 5~9세 | 10~14세 | 계     |
|------|------|------|--------|-------|
| 2002 | 601  | 418  | 191    | 1,210 |
| 2003 | 481  | 353  | 182    | 1,016 |
| 2004 | 401  | 310  | 180    | 891   |
| 2005 | 312  | 284  | 160    | 756   |

[그림 4-22]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 추이



## 제 5 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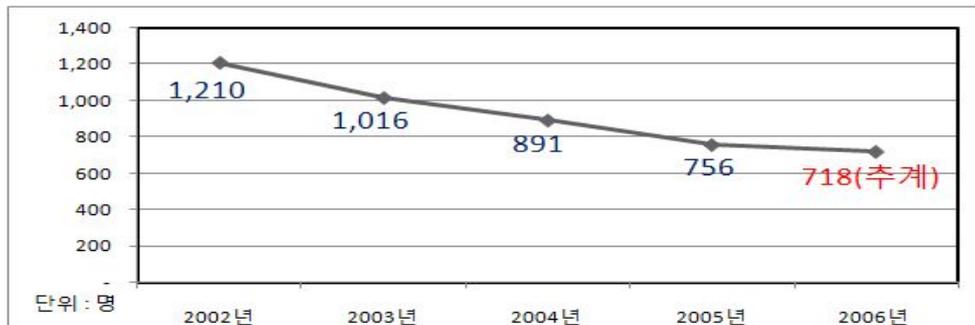
### 제 1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성과와 문제점

#### 1.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주요 성과

##### 가.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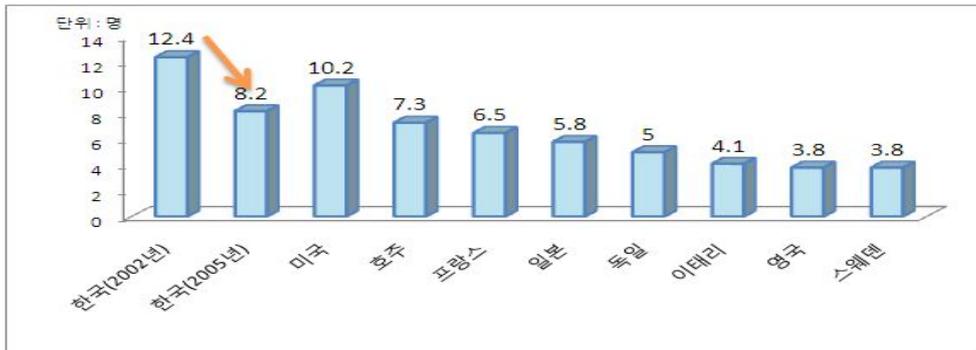
아동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에는 718명으로 40.6%가 감소하였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07년에는 종합대책의 목표인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50% 감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이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5-1] 연도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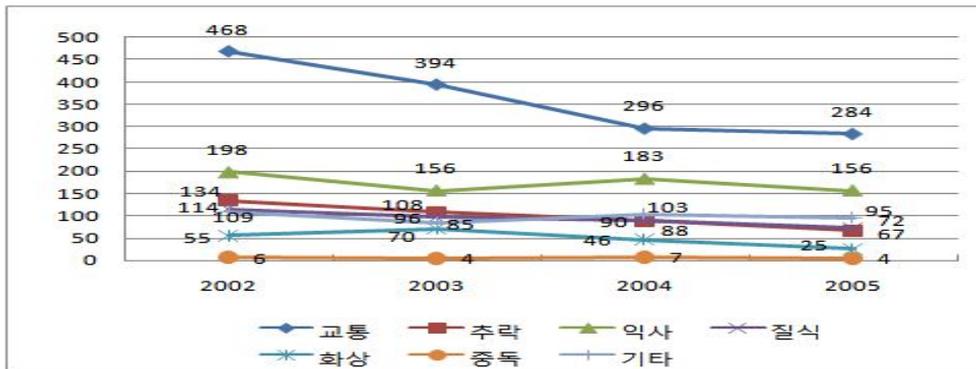
또한 아동안전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2.4명에서 2005년 8.2명으로 33.9%가 감소하였다. 2006년에는 7.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국가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 사망자도 대폭 감소하였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의 38.7%를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2년 468명에서 2005년에는 284명으로 39.3%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보행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 추락사고 사망자는 2003년부터 추진된 ‘주택난간 기준 강화’로 2002년 134명에서 2005년에는 67명으로 50% 감소하였다.

[그림 5-3] 연도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 추이



나. 아동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강화

정부는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개 법률을 제정하였고, 12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2005년 5월에는 미아발생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2007년 1월에는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아동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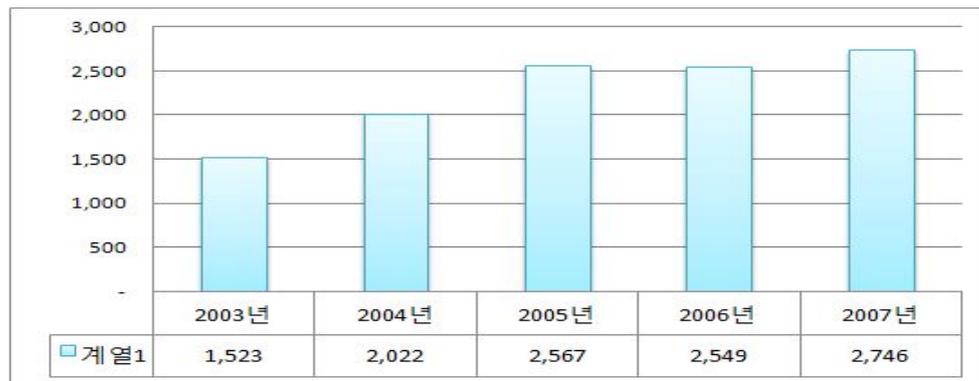
〈표 5-1〉 아동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 구분       | 시기     | 법령                    | 주요 내용   | 성과                          |
|----------|--------|-----------------------|---|-----------------------------|
| 신설<br>법규 | '05.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미아찾기  | 복지부와 경찰청의 업무와 역할을 명시        |
|          | '07.1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근거 마련                                      |                             |
|          | '07.1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산자부)     | 어린이놀이 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                     | 아동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보상 시스템 구축 |
|          | '04.1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어린이보호포장제도 도입  | 어린이중독사고 예방                  |
|          | '05.12 | 관리법                   |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 제도 개편 및 신속조치제도 신설                         | 어린이 용품 안전 관리 강화             |
|          | '05.5  | 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 어린이 통학권 강화                  |
|          | '05.7  | 수난구조법                 | 구조구급 책임명시   |                             |
|          | '07.1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                             |
|          | '05.3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                             |
|          | '06.6  | 소방기본법                 | 안전체험관 설립근거 마련   |                             |
| 개정<br>법규 | '05.3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화 등   |                             |
|          | '06.6  |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정보등록·열람 제도 신설                     |                             |
|          | '07.8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 강화 및 친고죄에서 반의사벌죄로 변경 |                             |
|          | '05.3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도모                                     |                             |
|          | '05.1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동관련 시설 방염처리 제품 사용                                    |                             |
|          | '05.12 | 약사법                   | 약품보호포장용기 도입   |                             |
|          | '04.3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예방교육홍보 방법과 시기 명시                                    |                             |

#### 다. 아동안전대책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정부는 아동안전 원년 선포 이후, 아동안전대책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2003년 1523억원에서 2007년에는 2746억원으로 80.3% 증액하였다.

[그림 5-4] 아동안전대책 관련 예산변동 추이



#### 라.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의 근거마련

안전문화 체험관 건립, 어린이교통안전공원 및 체험장 건립, 아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 2. 아동안전종합대책의 문제점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아동 안전사고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24명에서 2005년 8.2명으로 33.9% 감소되었으나, 주요 선진 국가보다 높게 나왔다. 영국은 3.8명, 독일 5명, 일본 5.8명, 호주 7.3명이다. 특히,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4.8명에서 2005년 3.1명으로 35.4% 감소되었으나, OECD 평균 1.8명보다 높다. 영국·일본은 1.1명, 프랑스 1.3명,

이탈리아 1.4명, 캐나다 1.8명이었다('05, OECD).

둘째, 아동 사고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아동 사고 관련 손상율은 높은 편이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손상환자 27,842명 중 10세 이하 아동 손상환자가 6,457명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아동 안전대책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현재 아동 안전대책에 대한 연차별 및 종합적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 즉 증장기 아동 안전대책 수립·추진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아 대책의 체계적 수립 및 평가가 곤란하다. 또한 아동 안전사고 관련 통계 및 안전지표도 미흡하다.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제외하고는 아동안전대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아동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다. 아동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연구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다섯째, 아동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사고와의 연계성 인식 부족으로 연령집단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사고의 71.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5세 이하 및 13세 이상 아동(학령후기)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가정 내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여섯째, 아동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당시, 아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고라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부처간 담당자의 이해가 미진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개념 정립도 부처간 의견을 달리하였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와 사고와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책추진 대상집단과 연령층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어린이교통안전대책에서 주로 학령기아동에 대한 대상으로 국한되어 정책이 추진되어왔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일곱째, 지자체의 참여가 부족하다. 아동의 사고방지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아동 사고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안전대책의 성과는 결국 최일선 조직인 시·군·구가 얼마나 앞

장서느냐에 달려 있으며, 시·군·구가 아동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만들고, 이를 위해 아동안전 관련 시설과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안전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덟째,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사업이 미비하다. 아동의 사고와 관련된 사망과 손상 및 폭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함으로써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고대책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안전대책은 주로 시설개선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며, 홍보 및 예방사업 수행에는 예산지원이 매우 미비했다. 또한 홍보사업도 중앙부처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미흡했다.

## 제 2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향후 과제

2003년 아동안전종합대책 추진 이후 아동사망률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동이 살기 좋은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살펴본다면 첫째, 아동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아동안전대책 수립·추진 및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아동안전 관련 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지표를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안전 관련 조사·연구 및 안전 관련 모니터링 등의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OECD국가의 경우 아동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위험인자 및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국가 비전과 분명한 목표 설정 하에 정부와 민간기구 협력으로 중장기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가정 내 사고, 여름철 사고, 영유아 사고 등의 감소를 위한 유형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속도 30km로 제한하고,

어린이 도로안전 진단제도 도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률도 확대해 나간다. 중독사고의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아동용품의 표시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용품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가정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손상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포함된 모자안전수첩을 배포하고, 부모대상 응급조치 교육 강화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Safe House Start)을 실시한다. 영유아사고의 경우는 영유아 사망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지침을 마련한다.

## 제 6 장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안)」

### 제 1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

#### 1. 비전과 목표

향후 5개년 간 추진하게 될 아동안전종합대책은 '아동이 살기 좋은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환경(가정, 학교, 보육시설, 공공장소, 지역사회 및 여가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한 생활 유지, 사고 위험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윤택하고 즐거운 삶 향유, 가족의 걱정 및 불안감 감소, 사고로 인한 각계의 혼란 및 갈등 방지, 사고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 자료를 통한 사고감소율 제고, 국가의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가경쟁력 극대화를 세부목표로 정하였다.

정책추진방향은 아동의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증진, 아동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아동 안전정책 기반 조성, 부처별 부문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통합, 아동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 향상,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주요부분별, 아동연령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표 6-1〉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        |  |
|--------|--|
| 비전     | 아동이 살기 좋은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
| 목표     | 아동친화적인 안전한 환경조성  |
| 세부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환경(가정, 학교, 보육시설, 공공장소, 지역사회 및 여가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한 생활 유지.</li> <li>● 사고 위험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윤택하고 즐거운 삶 향유.</li> <li>● 가족의 걱정 및 불안감 감소.</li> <li>● 사고로 인한 각계의 혼란 및 갈등 방지.</li> <li>● 사고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 자료를 통한 사고감소를 제고.</li> <li>● 국가의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가경쟁력 극대화.</li> </ul>   |
| 정책추진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증진.</li> <li>● 아동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li> <li>●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li> <li>●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아동안전정책 기반 조성.</li> <li>● 부처별 부문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통합.</li> <li>● 아동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 향상.</li> <li>●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li> <li>●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li> <li>● 주요부분별, 아동연령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li> <li>● 민간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li> </ul> |

## 2. 실천전략

### 가. 아동의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증진

- 대부분의 아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참여와 인식 수준 제고
- 아동 사고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활성화
-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사업장, 공공장소, 학교, 가정, 도로, 스포츠와 여가 환경, 농촌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의 사고예방을 향상시키기 위한 참여와 동기 유발
- 아동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들 격려
- 아동 사고예방에 대한 실천방법 개발 장려
- 사고예방 실천을 위한 참여를 격려하고 자극함으로써 사고예방을 위한 비전과 목표 확립

- 적극적인 사고예방 행동과 환경적 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동기 제공

#### 나. 아동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 사고가 발생된 이유와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
-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공공캠페인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기술 발달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의 사고예방 능력과 역량 증진
- 교육프로그램과 과정을 제정함으로써 학년과 교과과정에 사고예방 통합
- 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제정
- 사고예방 연구 센터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팀들을 지지하고 중요한 사고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

#### 다.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

-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안전한 환경, 시스템, 제품 개발
- 환경, 시스템, 제품의 안전한 디자인과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준을 향상시키고 발전
- 구매결정을 할 때 사고예방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격려

#### 라. 사고예방을 위한 공공정책과 규제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안전정책 기반 조성

- 사고예방을 촉진시키고 지지하는 필수적인 기준과 정책, 규제의 준수를 강화
- 사고예방 전망을 통해 규제와 정책의 영향을 평가
-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을 촉진시키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 규제와 정책을 발달시키고 이행

마.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 통합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간의 사고예방을 위한 협력관계 확보
- 사고예방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협조 메커니즘을 확립하거나 강화
- 다양한 분야(조직체, 지역사회, 지역, 국가)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와 협조를 위한 계획을 이행하고 발달

바.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향상

- 사고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조사
-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들의 인구학적(예: 연령과 성), 지리적, 사회 경제적 특성, 기초적인(예: 사회적 위치) 조사와 더 즉각적인(예: 알콜중독) 사고에 기여하는 요인을 조사
- 예방을 위한 기회 의미로 특별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자료를 대조하고 분석
- 적절하고 포괄적인 사고통계 자료와 사고 기초 자료의 협조와 증대를 통해 사고 감시 시스템을 향상
- 사고예방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 개입과 그 효과성에 대한 사고통계와 정보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전 전문가와 실천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과 생활자들에게 보급
- 사고예방 연구 전략은 중요한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
- 안전 문화와 안전한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조사

사.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 사고위험이 가장 큰 집단들, 사고발생 장소, 사고환경을 확인
-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거나 핵심적 책임을 가지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집단을 위한 개입방법 확보

- 효과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핵심 특징을 확인하고, 개입 계획과 실행에 대한 지식들을 적용
- 아. 사고당사자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 사고당사자, 가족, 중요 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사고 상황, 응급의료처리 및 양질의 재활 치료 제공
  - 응급대처 서비스, 응급치료, 재활센터들이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개입을 지지하고 교육적인 자원을 제공
- 자. 주요 부분별, 주요 대상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 교통, 화재 등 기존의 국내 사고예방 전략 제고
  - 고위험 집단(예를 들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고예방 전략 개발
- 차.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 사고예방 리더십을 실현해보이기 위해 지역사회내 영향력 있는 지위를 지닌 개인과 조직 장려
  - 사고예방 리더십을 실현해보이기 위해 지자체 참여 장려
  - 국내 사고예방 우선권에 초점을 두고 전체를 대표하는 전략의 조정을 이끌어가는 특정 정부기관들을 확실히 함으로써 리더십을 제공
  - 사고예방 책임을 지닌 정부 기관들의 수행 측정과 함께 그들의 책임성을 문서로 확실히 함.

## 제 2 절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본 계획은 아동안전 기반구축,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안전 기반구축은 아동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아동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를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은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교육 및 보육환경 조성,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아동보호, 안전한 급식 및 식품 제공을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아동학대 제도개선 및 예방,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 유해환경에서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은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손상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지원을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표 6-2〉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관련부처   |
|-------------------------|---|--|
| 1. 아동안전 기반구축            | 1-1. 아동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br>1-2. 아동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br>1-3.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 총리실, 복지부<br>통계청<br>총리실, 복지부<br>경제부, 환경부<br>행안부, 지자체                    |
| 2.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 2-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br>2-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br>2-3. 안전한 교육 및 보육환경 조성<br>2-4.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아동보호<br>2-5. 안전한 급식 및 식품 제공 | 복지부, 국해부<br>방재청<br>복지부, 행안부<br>경찰청<br>교과부, 복지부<br>경제부, 소방청<br>교과부, 식약청 |
| 3.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 |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br>3-2. 아동학대 제도개선 및 예방<br>3-3.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br>3-4. 유해환경에서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 교과부, 복지부<br>경찰청<br>복지부<br>복지부, 경찰청<br>교과부, 복지부<br>국해부, 경제부             |
| 4. 손상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 4-1.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br>4-2. 손상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지원   | 복지부, 소방청<br>복지부, 교과부   |

### 제 3 절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 1. 아동안전 기반 구축

##### 1-1. 아동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아동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 ○ 사업의 필요성

-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방향 및 내용 선정이 필요함.
- 영국의 사례 제시

###### ○ 사업내용

- 아동안전사업의 성과 및 각 지자체, 부처의 아동안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아동안전 각 분야별 안전지표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통해 정기적(1년 단위) 부처, 각 지자체 아동안전사업평가 및 평가정보 공유.

######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확대

###### ○ 사업의 필요성

- 아동안전과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어 수요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사고에 대한 기본적 통계자료가 필요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사고 예방사업의 우선순위 및 방향을 설정해야 함.
- 현재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생성되는 아동안전통계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아동안전사고에 즉각적인 대응 및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센터 설립 및 지자체 확대가 필요함.

〈미국 사례〉

미국은 보건성 공중위생국 질병관리본부(CDC)내 국립사고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NCIPC)를 두어 다른 정부기관, 국가, 주, 지역기관, 지역의 공중위생국이나 연구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사고방지에 힘쓰고 있으나 특별히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지원, 전문가 훈련, 연구활동을 위해 CSN을 설립함.

CSN(Children's Safety Network)

CSN은 연방 보건성내 모자보건부(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의 펀드를 받아 세계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 전국 상해, 폭력예방센터 : 자료, 전문지식, 인적 DB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상해관련 정보제공과 다양한 기획업무 수행.
- 농촌안전센터: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 경제센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상해건수 및 비용 등을 조사하고 정책대안 제시.

업무 및 서비스

- 상해방지와 모자보건활동의 통합.
- 주 정부 보건당국 안팎으로 상해방지, 모자보건 등의 프로그램 사이의 파트너쉽 형성.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증된 전략의 실천.
- 상해정보 수집 및 활용, 효과적 정책 개발, 적절한 자본과 인력형성.
- 상해 예방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 주정부,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상해예방의 중요성 알리기.
-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한 기술 및 정보 지원.
- 출판, 인적 DB.
- CSN Discuss 운영.
- 최근 상해관련 리서치 목록을 매주 업데이트.
- 상해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샵.
-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업데이트.

〈일본 사례〉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공중위생원의 모자보건팀에서 아동안전업무 전담. 시정촌 관계자들의 각 지역아동안전활동을 위한 매뉴얼(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정촌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안전센터 업무지원. 동경도, 시마네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아동안전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영국 사례〉

영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RoSPA(국립사고예방협회)와 CAPT(어린이사고방지협회)에 기금을 지원하여 아동안전사고예방활동 전개.

주요업무

- 아동사고통계(HASS, LASS)수집.
- 아동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
- 아동안전교육 실시.
- 아동안전캠페인 전개.
- 가정안전캠페인 전개.

〈캐나다 사례〉

캐나다의 보건성 산하 공중보건원의 건강증진센터(Centre for Health Promotion)의 Health Surveillance and Epidemiology Division내 Child Injury section 담당.

주요업무

- 어린이손상정보 제공.
- 아동손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상해보고서 발간.
- 아동상해 분석.
- 주된 기능: 아동손상에 대한 연구기능.

○ 사업내용

- 중앙아동안전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
- 각 지방아동안전센터 구축 및 확대.
- 정책개발, 연구·조사, 평가, 교육, 대외협력, 가정안전사업 지원 등의 주요 기능을 갖도록 함.
  - 아동안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아동의 사고사망 사례조사 및 원인분석, 사고사망에 따른 손실 비용 편익 분석.
  - 아동안전 사고 통계시스템 구축(관련 부처 생성자료 통합하여 분야별, 생애주기별 통계 정리 및 자료 재생성, 통계분석 및 아동안전백서 발간).
  - 아동안전 위해 정보의 수집·공유·활용.
  - 아동안전 증진 기술 개발·지원.
  - 아동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아동안전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 아동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 아동 위해환경 모니터링.
  - 가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가정환경 지원.
  - 아동안전 및 사고예방프로그램 수행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아동사고예방활동 전략수립.
  - 아동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전국 아동사고조사(연간).

4-1-2. 아동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강화

□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분석결과 어린이 안전관련 법 강화 및 제도정비를 통한 감소효과가 있었음(2003년부터 2007년까지 3개 법률 신설, 12개 법률 개정) 향후 아동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함. 현재 OECD와 관련하여 국내 안전관련 법·제도는 미비한 수준이므로 강화해야 함.

[그림 6-1] 유럽국가와 국내 아동안전관련 법 비교

|       | 아동용<br>위험물<br>자전거<br>헬멧착용 | 아동안<br>전벨트<br>/카시<br>트 | 아동용<br>위험물<br>안전벨<br>트 | 도시지<br>역에서<br>도로도<br>속도<br>제한 | 집안청<br>소기의<br>아동안<br>전보호<br>포장용<br>기 | 약물관<br>련 아<br>동보호<br>포장용<br>기 | 가정내<br>연기감<br>지기 | 가정내<br>장수명<br>장유<br>계울<br>타리 | 농장경<br>계에<br>대하<br>아동<br>전과<br>상지<br>금지 | 놀이<br>터기<br>안전<br>준<br>비 | 아동에<br>게 불<br>안한<br>장난<br>감<br>지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 아동안전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안전 관련 법령 정비(OECD 국가 수준).

## □ 안전관리대상 아동용품 확대 및 안전기준 강화

## ○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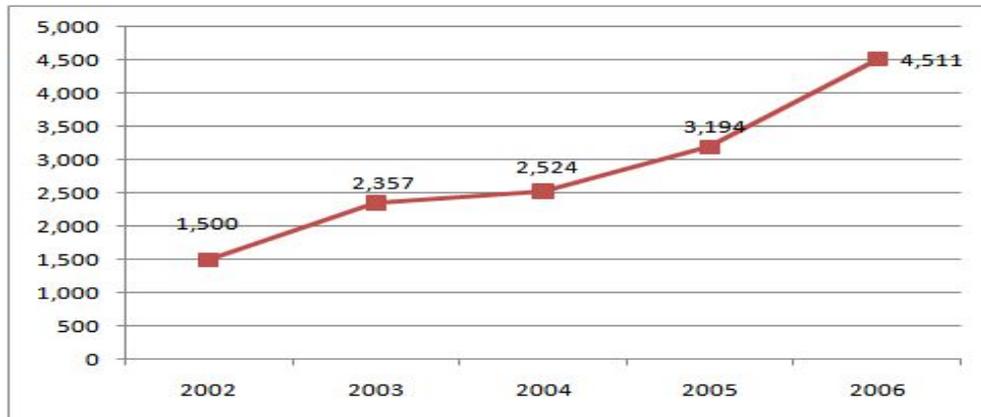
- 아동용품 사고발생률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기준이 확대·강화되어야 함.

〈표 6-3〉 어린이용품 관련 안전사고

(단위: 건)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사고건수 | 1,500 | 2,357 | 2,524 | 3,194 | 4,511 |

[그림 6-2] 어린이 용품 사고건수 추이



## ○ 사업내용

- 현행 아동용품 안전실태 및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를 통한 위해용품 발굴.
- 위해용품 대상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지정 및 안전기준 강화.

1-3. 아동 안전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 지역별 아동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안전추진사업을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아동안전 추진기관 및 관련기관의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함.

○ 사업내용

- 16개시·도 아동안전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지역 아동안전 예방사업 실시.
- 아동안전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아동안전 담당 공무원의 안전역량 강화.

□ 아동제품 안전기술 지원 및 안전용품 개발

○ 사업의 필요성

- 아동과 관련된 물품으로 인한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용품보급이 무엇보다 필요함. 아동안전사고 발생분야 중 사고사망 및 부상률이 높은 교통, 추락, 익사사고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품 개발 및 기술 상용화함으로써 사고예방을 위한 상품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함.

○ 사업내용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제품의 안전기술이 개발되기 위한 연구활동 지원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홍보 확대

○ 사업의 필요성

- 선진국에서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아동안전 사고 예방을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필요한 만큼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

〈영국의 사례〉

아동안전주간(Child Safety Week)을 지정하여 부모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활동과 행사, 캠페인을 각 지역에서 일주일동안 실시함.

〈일본의 사례〉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봄과 가을에 교통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운동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교통안전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사업내용

- 아동안전 NGO와 연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전개.
- 홍보물 및 TV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활성화.

## 2.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 2-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가정사고 예방사업(Safe House Start)확대

○ 사업의 필요성

- 가정 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발표(2007)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위해발생장소별로는 「가정 내 안전사고」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60%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 위해사고는 2004년도 3,069건(전체 35.19%), 2005년도 4,392건(전체 36.08%), 2006년도 7,438건(전체 49.53%)으로 매해 꾸준히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사고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사고의 44.6%가 영유아기인

“3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예방홍보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생활안전연합(2006)의 14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 1,624명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점 23점 만점에 11.74점(100점 만점기준 51.1점)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심각할 정도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병관리본부 제1차 퇴원환자조사(2005)에서 연령별 손상발생장소를 살펴보면, 0-14세 아동의 사고 장소 1순위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6-4〉 연령별 손상발생장소

(단위: %)

| 구분     | 거주시설 | 가정   | 학교   | 스포츠<br>운동장소 | 도로,<br>고속도로 | 상업지역 | 상업,<br>건설현<br>장 | 농장  | 다른교<br>통지역 | 야외,<br>바다,물 | 기타,<br>미상 |
|--------|------|------|------|-------------|-------------|------|-----------------|-----|------------|-------------|-----------|
| 0-14세  | 2.5  | 23.1 | 10.3 | 6.1         | 32.9        | 1.9  | 0.4             | 0.4 | 1.1        | 2.8         | 18.6      |
| 15-24세 | 1.5  | 8.2  | 3.7  | 6.1         | 44.9        | 3.9  | 0.3             | 0.3 | 1.2        | 2.5         | 22.5      |
| 25-34세 | 1.1  | 7.6  | 0.9  | 4.2         | 47.2        | 3.8  | 0.2             | 0.2 | 0.9        | 2.4         | 20.7      |
| 35-44세 | 0.8  | 10.7 | 0.5  | 3.1         | 41.6        | 3.7  | 0.8             | 0.8 | 1.0        | 3.2         | 20.9      |
| 45-54세 | 0.9  | 11.9 | 0.6  | 1.7         | 40.6        | 3.1  | 1.5             | 1.5 | 0.9        | 4.0         | 22.7      |
| 55-64세 | 2.1  | 13.7 | 0.8  | 0.6         | 40.2        | 3.1  | 2.9             | 2.9 | 1.3        | 4.9         | 20.6      |
| 65세이상  | 2.9  | 28.3 | 1.5  | 0.3         | 26.1        | 1.5  | 4.3             | 4.3 | 1.0        | 4.1         | 28.4      |

자료: 질병관리본부, 『제1차 퇴원환자조사』, 2005.

- 정부의 아동안전종합대책은 현재 12대 분야 76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일본의 사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후생성에서 「건강한 부모-자녀 21」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한 부모-자녀 21」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민운동계획으로 5개 중점과제 중 하나가 어린이 사고방지를 비롯한 안전한 육아환경의 확보로 어린이 사고방지를 이해 어린이 사고방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부모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의 사례〉

유럽아동안전연맹은 유럽연합 22개국에서 Home Safety 캠페인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사례〉

오스트리아는 정부차원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용품이 들어 있는 SafetyBox 보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사업내용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확대.
- 부모대상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사이트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 매스미디어를 통한 안전캠페인 전개 및 홍보 강화.

□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 개발 및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가정사고 발생원인 중 주거시설 주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함.

○ 사업내용

- 어린이 주거시설의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
- 어린이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

□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

○ 사업의 필요성

- 전체 화재사고 사망자의 63.9%, 부상자의 45%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소방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6-5〉 연령별 손상발생장소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발생건수   |       | 인명피해 |      |       |      | 재산피해    |
|--------|--------|-------|------|------|-------|------|---------|
|        |        |       | 사망   |      | 부상    |      |         |
| 총계     | 31,778 |       | 446  |      | 1,734 |      | 150,792 |
| 주택,아파트 | 8,234  | 25.91 | 285  | 63.9 | 781   | 45.0 | 25,530  |
| 차량     | 5,929  | 18.66 | 46   | 10.3 | 124   | 7.2  | 12,616  |
| 공장,작업장 | 3,261  | 10.26 | 13   | 2.9  | 179   | 10.3 | 48,272  |
| 음식점    | 1,960  | 6.17  | 15   | 3.4  | 126   | 7.3  | 7,012   |
| 접포     | 1,685  | 5.30  | 12   | 2.7  | 78    | 4.5  | 9,343   |
| 창고     | 801    | 2.52  | 6    | 1.3  | 32    | 1.8  | 8,579   |
| 사업장    | 470    | 1.48  | 2    | 0.4  | 30    | 1.7  | 2,830   |
| 호텔,여관  | 278    | 0.87  | 13   | 2.9  | 76    | 4.4  | 713     |
| 학교     | 273    | 0.86  | 0    | 0.0  | 11    | 0.6  | 498     |
| 선박     | 74     | 0.23  | 2    | 0.4  | 8     | 0.5  | 530     |
| 시장     | 34     | 0.11  | 0    | 0.0  | 2     | 0.1  | 1,492   |
| 기타     | 8,779  | 27.63 | 52   | 11.6 | 287   | 16.6 | 33,377  |

자료: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007.

○ 사업내용

-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 단계적 실시.
-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거주 가정 대상 연기탐지기 무료 설치.

2-2.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효율적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시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개소는 점차 증가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정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미비한 경우

가 많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 내에는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칼라포장만을 설치할 뿐 필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표 6-6〉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 m)

| 구분 | 어린이 보호구역<br>지정현황<br>(미지정필요학교) | 어린이보호시설   |             |                |            |
|----|-------------------------------|-----------|-------------|----------------|------------|
|    |                               | 미설치<br>개교 | 과속방지턱<br>개소 | 미구분 보·차도<br>개소 | 구역<br>연장거리 |
| 전국 | 4,559(147)                    | 2,415     | 3,791       | 2,140          | 391,593    |
| 서울 | 546                           | 191       | 432         | 256            | 41,000     |
| 부산 | 273(7)                        | 96        | 178         | 66             | 7,830      |
| 대구 | 191                           | 50        | 67          | 64             | 9,125      |
| 인천 | 185(16)                       | 75        | 136         | 46             | 6,825      |
| 울산 | 86                            | 71        | 76          | 84             | 15,710     |
| 경기 | 910(4)                        | 350       | 525         | 286            | 38,165     |
| 강원 | 167(47)                       | 149       | 274         | 135            | 24,685     |
| 충북 | 220(7)                        | 123       | 226         | 78             | 17,350     |
| 충남 | 392(7)                        | 181       | 235         | 150            | 34,852     |
| 전북 | 304(7)                        | 199       | 202         | 207            | 48,631     |
| 전남 | 509(10)                       | 286       | 290         | 271            | 52,000     |
| 경북 | 341                           | 227       | 299         | 199            | 47,250     |
| 경남 | 338(42)                       | 320       | 708         | 240            | 41,370     |
| 제주 | 97                            | 97        | 143         | 58             | 6,800      |

자료: 한국생활안전연합,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2005.

-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시설,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로부속물 설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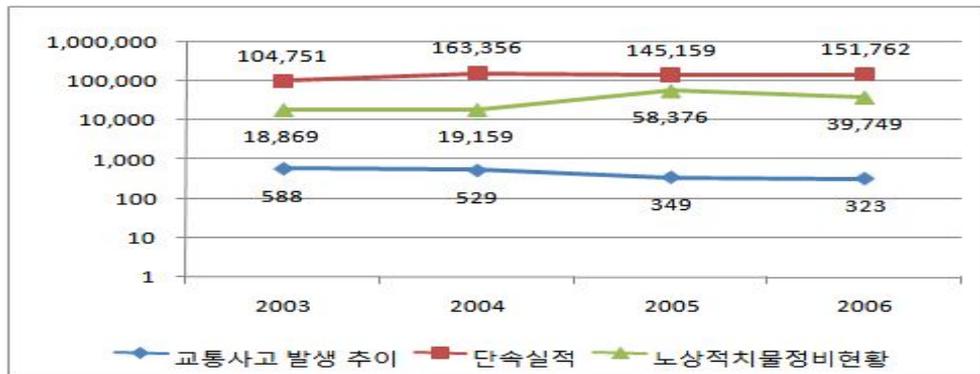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주변 도로안전 진단제도 도입 및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전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효과성 검증.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데이터 베이스화
-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호활동 지원
- 학교별 안전한 통학계획 수립.

□ 교통단속 및 홍보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과 노상적치물 정비현황과 연계지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적치물을 정비한 실적이 높은 2005년도에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강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적치물 정비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그림 6-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과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추이



- 2005년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정 속도인 30km 이상으로 주행하

는 차량들이 관측되었고,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체 차량의 약 47.6%가 6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 및 일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통한 시민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함.

○ 사업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범칙금 강화.
-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단속 강화.
- 일반시민 및 운전자 대상 홍보 실시.

□ 어린이보호 차량 관련 기준 및 제도 개선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6-7〉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 (단위: 명, 건) |     |     |     |
|------------|-----|-----|-----|
| 구분         | 발생  | 사망자 | 부상자 |
| 2005년      | 129 | 11  | 195 |
| 2006년      | 120 | 13  | 194 |
| '07년 1~3월  | 20  | 5   | 17  |

- 2007년 전국에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수는 대략 10~20만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단지 12,452대의 차량만이 통학버스 용도로 신고 되어 약 10% 정도의 낮은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6-8〉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현황

(단위: 대)

| 합계     | 학교별   |       |       |       |      | 승차정원별  |         |        |
|--------|-------|-------|-------|-------|------|--------|---------|--------|
|        | 보육시설  | 유치원   | 학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25인승미만 | 25~44인승 | 45인승이상 |
| 12,452 | 5,882 | 2,487 | 1,342 | 2,451 | 290  | 8,966  | 2,733   | 753    |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차량 안전성 개선(표시등 점멸방법 개선, 후방감지센터 또는 카메라 설치의무화, 승강구 제2단의 발판높이 기준개선 등)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의무화를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
-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전자 교육과정 운영

□ 교통안전교육 기반 마련

○ 사업의 필요성

- 교통안전교육의 확대 실시 및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확보 필요.

○ 사업내용

- 연령별 국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기준 개발 및 보급
- 교통안전교육 교수자료 개발 및 보급
- 교통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 유아교통안전클럽 육성

□ 아동안전모 및 카시트 착용률 확대

○ 사업의 필요성

-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수는 보행중은 10,697명이고 자동차승차 중에 부상당한 어린이가 12,314명으로 자동차승차 중에 부상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6세 미만의 유아는 14세 이하 어린이의 승차 중 교통사고 발생률의 30%를 차지함. 즉, 14세 이하 어린이 자동차 승차 중 교통사고 사상자 및 부상자의 3명 중 1명이 6세 미만의 유아임.

〈표 6-9〉 2005년도 어린이교통사고 상태별 사상자수

(단위: 명)

| 구분 | 계      | 자동차 승차 중 | 이륜차 승차 중 | 자전거 승차중 | 보행중    | 기타  |
|----|--------|----------|----------|---------|--------|-----|
| 사망 | 284    | 59       | 2        | 21      | 194    | 8   |
| 부상 | 25,314 | 12,329   | 133      | 1,877   | 10,697 | 278 |

- 국내 어린이카시트 착용률은 미국 94%, 스웨덴 93%, 캐나다 87%, 독일 96%에 비해 한국은 11.6%로 선진국에 비해 착용률이 저조함.

〈표 6-10〉 유아탑승 차량 1,523대 대상 조사

(단위: 명)

| 구분      | 착용률           |
|---------|---------------|
| 카시트 착용  | 11.6%(176대)   |
| 카시트 미착용 | 88.4%(1,347대) |

자료: 한국생활안전연합, 2004.

#### ○ 사업내용

- 어린이카시트 안전성 제고방안 마련
- 아동안전모 및 카시트 보급 확대
- 어린이카시트 올바른 착용법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안전모착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2-3. 안전한 교육 및 보육환경 조성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 사업의 필요성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인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 유치원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안전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제도 마련.
- 안전인증제 기준 마련 및 시범적용 실시.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기준 적용 및 강화.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

##### ○ 사업의 필요성

- 교육시설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안전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교육 및 보육시설 아동 대상 안전교육 실시, 보고 의무화.
-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교재 및 안전리플렛 개발·보급.

#### 안전사고 보상체계 현실화

##### ○ 사업의 필요성

- 현재 보육시설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은 화재손해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아동 상해보험은 아동의 상해를 담보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제도 하

에서는 음식물에 의한 안전사고나 보육시설의 제3자의 상해, 시설 업무 수행 중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

- 부상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부담이 84.8%(2004년), 80%(2005년)인데 비하여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부담이 67%(2004년), 56%(2005년)으로서 심각한 사고의 경우 오히려 보험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시설부담은 부상사고의 경우 11.7%(2004년), 15.2%(2005년), 사망사고의 경우 30%(2004년), 33%(2005년)에 달하고 있음. 한편,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에는 치료실비만 포함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보상의 제외 범위가 너무 넓으며 일관성 없는 보상 기준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이 5천에서 1억 2천의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음(서울 경기 제외). 또한 보상처리기간이 길고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만으로 인한 고소와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제회 제도를 보육시설까지 확대·적용하여 안전사고 보상체계를 현실화함.
- 사업내용
-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고보상액에 대한 피해보상금 기준 재조정.

#### 2-4. 아동친화적 놀이환경 및 유해물질로부터 아동보호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유원놀이시설)환경 안전성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미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환경적인 안전성(주변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표준모델 개발
  - 아동·청소년 놀이시설 환경 정비(놀이시설 내 환경 및 주변 환경).
  - 영세 놀이시설 개선
  - 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 조사 및 놀이시설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놀이용품 안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 놀이용품 관련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구입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사항 및 신중용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놀이용품 표시제도 개선
  - 아동용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신중아동용품의 신속한 안전성 평가

□ 익사예방 체계 정비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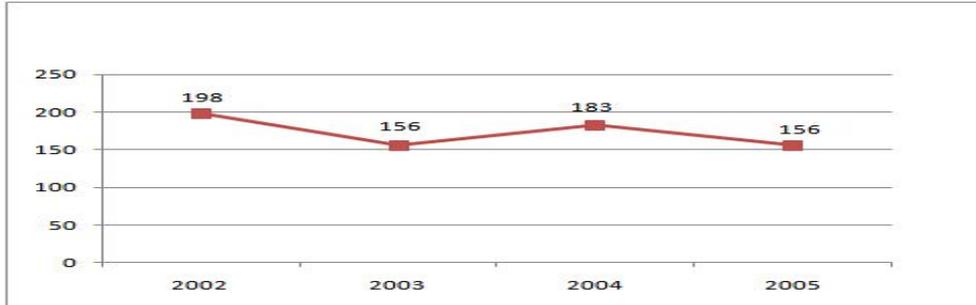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익사사고 사망자수가 감소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2005년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 이후 배치장소 물놀이 사망자가 36% 감소되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표 6-11〉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
| 어린이익사사고 사망자 | 156  | 186  | 156  |

[그림 6-4]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추이



## ○ 사업내용

- 익사사고예방 경고 표지판 및 경계망 구축
- 「119시민수상구조대」확대

## □ 유해물질 관리 강화

## ○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안감은 높아진 반면 정부의 대응수준은 미흡한 단계임. 지속적인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어린이 일상 생활공간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관련법률 제·개정, 어린이 환경기준 제정 또는 현행 기준 강화.
- 화학물질 노출차단, 행동특성조사 등을 통해 놀이터, 수영장 등 야외 생활공간의 화학물질 노출 기준 마련.
-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안전기준관리 강화
-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용품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확대, 유해화학물질·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제품 표시방법 개선, 함유독성, 제어방안 등 어린이용품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소비자 안전지침서」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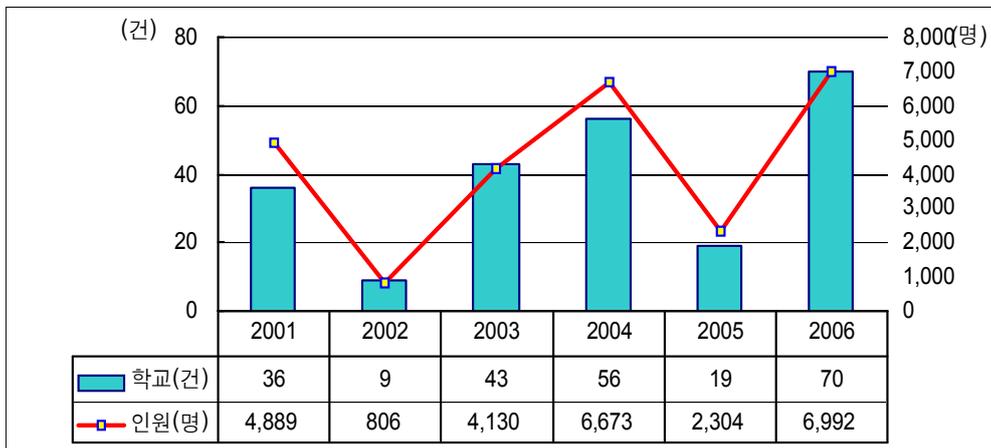
2-5. 안전한 급식 및 식품 제공

□ 학교급식 개선

○ 사업의 필요성

—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01년 36건, 2006년 70건).

[그림 6-5]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추이



자료: 교과부, 『학교급식사고 발생현황』, 2006.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개별 학교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일본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 (1) 안전한 고품질의 식자재를 공급
- (2) 현 단위의 물류센터 확보
  - ※ 공동구매는 일정한 급식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물가변동에 따라 식자재의 가격과 질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함
  - 공동구매 품목수(후쿠오카 현): 46개(1974년)→ 146개(2002년)
  - ※ 식자재 구입은 교육위원회 또는 조리장별로 물자선정위원회 등을 조직해 학교영양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관할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공신력 있는 우수한 납품업자명단을 작성하여 선정
  - ※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지역시장, 개인농가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 (3) 학부모와 학교영양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연수회·강습회, 정보 수집·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식단과 조리기술 등의 보급
- (4) 단위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다양한 식품검사를 실시를 통하여 불량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

○ 사업내용

-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또는 센터설치 활성화방안 강구.
- 농촌, 도시 등 지역설정에 알맞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 위탁급식, 직영체제 등 바람직한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방안 마련.
-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 어린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아동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별도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설정 및 관리를 통한 식품사고 예방 필요.

○ 사업내용

- 중금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및 규격 제·개정.
-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성 평가 실시.
- 아동 다소비 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량 규제 방안 강구.
- 학교 및 주택가의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식품보호안전구역 지정관리.

□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어린이 식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영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의 배치가 저조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내용

—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아동대상 식품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 콘텐츠 보급 및 교육 지원)  
 —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영양평가원 설치 운영.

3.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지속 전개 및 가·피해학생의 선도·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학교폭력 예방 치안시스템 마련으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하여 학교폭력 악순환 차단 기대.

※ 신정부 공약과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관련.

○ 사업내용

— 「학교폭력 자진신고(4~6월) 및 집중단속(9~10월) 기간」 정례 운영  
 — 「배움터지킴이」 전국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 '07년부터 교육부 및 지자체 주관, 전국 667개교(722명) 운영→'08년 809명→'09년 1,040명 증원/서울시교육청: '10년 초중고 전 학교 배치.
- 경찰단계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 연차적 확대 시행
  - ※ 現 52개서→'08년 100개서→'09년 150개서→'10년 200개서→'11년 238개 소경찰서.
  - ※ 現 4억원→'09년 21억원→'10년 28억원→'11년 34억원→'12년 39억원.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폭력·음란영상물, 음주 등 유해환경 영향으로 조폭 모방범죄 및 성폭행 등 흉포화범죄 잔존하여 지속적 대책 추진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학교폭력 발생원인: 사회환경 45%, 가정환경 29.1%, 폭력영상물 9.1% 등 ('05년 교육개발원).

○ 사업내용

- 교육기관 협조, 범죄예방교실 정례화 등 예방교육 강화.
- 우수 강의안 지속 발굴·보급 및 '사랑의 교실' 업그레이드 및 학교별 범죄 예방 교육 확대 (연2회→3회).
  - ※ '사랑의 교실' 활성화 예산 9천 6백만원 증액.
  - ※ 운영예산 現 8천 4백만원(93회)→'09년 1억 8천만원(200회).
-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정비로 범죄예방 및 선도 강화.
-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협조체제 구축 등 운영 활성화로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활성화.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피해자 확산을 예방하고 가

해자교육을 통해 가해자.

- 사업내용
  - 피해자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
  - 가해학생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
  -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

### 3-2. 아동학대 제도개선 및 예방

#### 피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사업의 필요성
  - 피학대 아동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사업내용
  - 아동학대 부모에 대해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 제도」 도입·추진.
  - 아동학대 상습 보호자에 대한 친권제한 또는 상실 조치 강화.
  - 학대받은 아동의 전문서비스 의무화.
  -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단체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운영.
  - 학대당한 아동의 일시보호기간(현행 3일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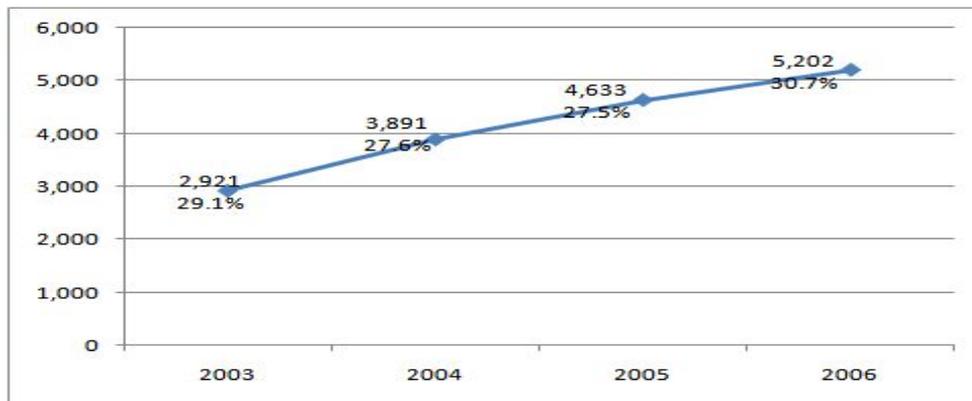
- 사업의 필요성
  - 아동학대 발생률을 증가하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6-12〉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단위: 명, %)

| 구분   | 아동학대 신고건수 |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
|------|-----------|------------|
| 2003 | 2,921     | 29.1       |
| 2004 | 3,891     | 27.6       |
| 2005 | 4,633     | 27.5       |
| 2006 | 5,202     | 30.7       |

[그림 6-6]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 신고인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 신고의무자교육 활성화.

## □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 ○ 사업의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 인식개선.

## ○ 사업내용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확대.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
-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피학대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피학대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시설이 부족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필요.
- 사업내용
  - 피학대아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아동보호기관 내 임상심리치료인력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법률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 피학대아동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 설치·운영.
  - 피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3-3.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

□ 실종예방·홍보활동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실종아동 발견률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이 강화 되어야 함.
- 사업내용
  -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 실종예방교육 강화.
  - 실종아동찾기시스템 홍보 강화 및 신고유도.

□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 구축 및 조기 가정복귀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대국민 관심·제보 유도 시스템 구축으로 실종아동 발견율 제고.

※ 8세 이하 아동 발견율 100% 근접, 9~13세 아동 발견율 99%대로 향상 목표.

○ 사업내용

—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찾기 시스템 과학화.

— 보건복지가족부·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협력강화.

— 자치단체·NGO 등 연계, 「전국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강화.

— (반기→ 분기별).

—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 참여기관 확대 지속 추진.

— 실종아동법 시행('05.12월)으로 14세미만으로 신고접수 대상 확대, 매년 실종아동 증가에 따른 예산·인력 확보 추진.

□ 실종사건 수사 활동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실종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건 수사전담 체계 구축, 수사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실종사건 수사전담반 설치 추진으로 수사 전문성 제고.

3-4. 유해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 및 단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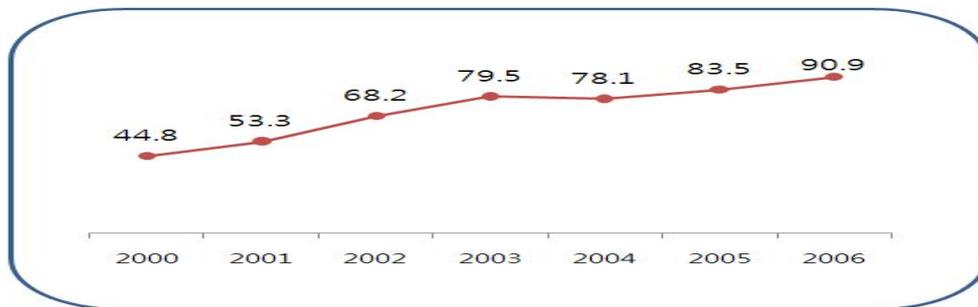
○ 사업의 필요성

— 아동 유해매체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아동유해매체물 결정 건수2003년

대비 2006년 5.5배 증가(보건복지가족부, 2006) 3,537건 (2003)→ 7,657건 (2004)→ 17,131건(2005)→ 19,475건(2006).

- 특히 청소년 성매매 중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4.8%에서 2006년 90.0%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6-7]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종합분석』, 2007.

○ 사업내용

- 지역별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 지역네트워크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 유해환경정화 조례 제정
- 아동클린지구 지정·운영
- 아동 유해업소 집중 단속
- 유해약물·물건 판매행위 단속 강화
- 유해매체 및 인터넷 단속강화
- 유해환경 노출 중독 아동 대상 치료서비스 제공

□ 학교 및 주거지 주변 유해업소 확산 방지

○ 사업의 필요성

- 학교 및 주변지역 유해업소 확산을 통한 청소년 친화적 사회 구축.

○ 사업내용

-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제도 개선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강화
- 이전·폐쇄업소 신속한 처리
-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 정화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감시활동 강화

□ 컴퓨터 중독 예방 및 체계 관리

○ 사업의 필요성

- 폭력성 게임 등 과도한 인터넷 게임몰입은 아동의 성장 발달 저해는 물론 일상생활 장애, 정신질환으로의 발전 우려가 있음.
- 초등학생 1.3%가 인터넷 중독 상태이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내실화
- 인터넷 및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화
-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아동성범죄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사업의 필요성

-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필요.

○ 사업내용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관련 법령 개정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피해아동 원스톱서비스 강화

4. 손상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4-1.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 사업의 필요성

- 아동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필요.

<외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보육시설의 화재감지기가 지역 999구조대의 전산망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의 신고 없이도 화재 등의 일부 응급상황에서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위급상황이 호출을 통해 경찰이 바로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사업내용

-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긴급상황 발생 시 바로 가까운 소방서에 연계될 수 있는 비상벨 의무적 설치.
- 아동구급 전화상담 개설: 야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아동을 구급할 수 있도록 핫라인 설치·운영.
- 아동응급환자의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 안전교육 교육기반 마련 및 안전교육 실시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3E정책 중의 하나인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사업내용

-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차원의 통일화된 연령별·분야별 아동 안전교육 목표 및 내용 선정을 위한 지침 개발.

-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예산 수립.
  - 생활안전 체험관 설립 및 확대(기존의 체험관과 차별화된 일상생활속에서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관 건립): 민간위탁 활성화.
- 아동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시설 종사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교재 및 안전리플렛 개발·보급.
  - 기관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 아동보호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4-2. 손상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구축

##### 아동전용 손상병원 지정·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국가수준의 아동사고 현황 파악 및 아동 전문 전담치료기관 부재.
- 사업내용
  - 아동전용 손상병원 지정 확대.
  - 아동전용 손상병원 손상데이터 집계 및 분석.

##### 저소득층 및 중대형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무화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및 중대형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전무한 실정임. 특히 중대형 손상의 경우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 가계에 많은 부담감을 가져옴.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손상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중대형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기준 제정.

— 중대형 손상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무화.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성·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아동이 병원·경찰서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거나 수사과정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곳에서 의료·상담·수사·법률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ONE-STOP지원센터 확대 설치 필요.

○ 사업내용

— 전국 15개 센터에서 운영 중인 ONE-STOP지원센터 외 센터 추가설치.  
— ONE-STOP지원센터 근무 경찰관 정원확보 및 상담사 증원 등 운영 활성화로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수사·법률지원 강화.

## 제 7 장 결 론

2005년 WHO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875,000명의 18세 이하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사고가 아동의 가장 큰 사망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사망요인으로는 교통사고와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아동이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의 상당수가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한다(윤선화, 2007).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의 인구가 점차 감소해 가는 시점에서, 또한 저출산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아동사고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WHO와 유니세프는 2005년 3월에 아동사고예방을 위한 회의를 갖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06년 WHO의 아동과 청소년 사고예방을 위한 10개년(2006-2015) 계획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윤선화, 2007).

우리나라는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였고, 2007년까지 5년 동안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본 대책을 통하여 아동사고사망률 10% 감소라는 목표대비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동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아동의 사고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5년 동안 목표로 삼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사고발생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8년부터 추진할 아동안전 5개년 종합대책은 좀더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질 높은 대책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따라서 2기 아동안전대책은 지금까지 아동안전이 안전사고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대나 폭력까지 포괄하는 아동안전의 개념으로 아동안전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한 정책과제 선정이 요구된다. 특히 근거에 기초하여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아동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1기 아동안전대책은 11개 부처가 함께 아동안전 정책과제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의 중복과 혼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대책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키거나 담보해내지 못했다.

아동안전대책이 수요자인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 역할과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부처별 역할 배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06년 아동정책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2006.
- 권기창·윤선화·곽영호·이종영(2006), 『아동 안전사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체계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곽숙영(2006), 『한국의 아동안전 정책 방향, 어린이안전대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태윤·윤선화(2004), 「미래사회 대비 안전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분석」,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김한중(2000), 「보건학적 과제로서의 사고 및 손상」,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심포지움 자료』,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
- 보건복지부(2001), 『아동건강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 박혜숙 외(2006),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통계 구축방안 연구』.
- 어린이보호육성추진단(2002), 『어린이보호·육성 5개년계획(안)』, 어린이보호육성추진단.
- 윤선화(1999), 「씨랜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안전 현주소와 미래」, 『『안전과 건강, 겨울호, 16-21』.』
- 윤선화(2000), 「아동의 안전권리 보장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정책 방향 모색」, 『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윤선화(200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소비자보호원.
- 윤선화(2003), 『아동사고 사망 요인에 따른 아동안전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선화(2004), 「우리나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생활안전연합.

- 윤선화(2005), 「아동 사고 사망요인에 따른 입법 및 규제 강화 정책 분석」, 한국아동  
권리학회, 『아동권리연구, 9(2)』.
- 윤선화(2007), 「참여정부의 아동안전정책 평가와 과제」, 『어린이안전토론회 자료집』, 한  
국소비자원.
- 윤선화·최영화·정윤경·박재영(2005),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한국생활  
안전연합·기아자동차.
- 이봉주 외(2006), 『중장기 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지연구소.
- 이재연·윤선화(2001), 「우리나라 1-14세 아동의 상해사망실태 분석」, 한국아동권리학  
회 『아동권리연구, 5(1)』.
- 이재연(2001), 「아동사고 사망 실태를 통해서 본 아동안전정책 방향」, 『어린이 안전  
보호 확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안전생활교육회.
- 이재연·김영희·윤선화 외(2003), 『어린이안전점검 활동 평가 및 실천전략』, 대통령비  
서실 어린이안전점검단.
- 임현진 외(1997), 「신체적, 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한국인구학 20(1) :161-199』.
- 장영희·윤선화·정윤경(2003), 『부모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방안  
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조준필(2002), 『손상 예방의 과학적 접근. 안전한 수원만들기 백서』, 수원시·수원시안  
전도시만들기협의회.
- 통계청(2001-2005),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아동안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생활안전연합(2006.5.4),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지수 발표」,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1995), 『어린이 안전제도 개선 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허정택(2007),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어린이안전토론회, 한국소비자원.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1998),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for  
Children and Youth. AAP.
- Baker, S.S., O'Neill, B., Ginsburg, M.J., & Li, G.(1992), The Injury Fact Book: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Berfenstam, R., & Soderqvist, I.(1992), The rights of children to safe environment-Swedish laws and regulations.

Chalmers, D., & Pless, B.(2001), UINCEFF's child injury league tables: a bag of mixed messages. *Injury Prevention*, 7, 81-82.

Christoffel, T., & Gallagher, S. S.(1999), *Injury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Practical Knowledge, Skills, & Strategies*. AAP.

Cohen, L. & Swift, S.(1999), The spectrum of prevention:develop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njury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5, 203-207.

David, J. C., & John, D. L.(1999), New Zealand's Injury Prevention Research Unit: helping shape injury prevention policy and practice. *Injury Prevention*, 5, 72-75.

O'Saunders, C., Forjuoh, S.N., West, P., & Brooks, C.(1999). Child death reviews: a gold mine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Injury Prevention*, 5, 276-279.

Pless, B.(1998). Action on injury: setting the agenda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UK. *Injury Prevention*, 4, 1-3.

Tom Christoffel, JD & Susan Scavo Gallagher, MPH(1999), *Injury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An Aspen Publication.

Towner, E., Dowswell, T., & Jarvis, S.(2001), Updating the evidence. A systematic review of what works in preventing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Part 1. *Injury Prevention*, 7, pp161-164.

Towner, E. & Towner, J.(2002), UINCEF's child injury league table. An analysis of legislation: more mixed messages. *Injury Prevention*, 8, 97-100.

WHO(1998),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WHO(2001), *Injury Surveillance Guidelines*.